



사법시험 폐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사법시험 폐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목 차

I. 사시 폐지의 당위성

1.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시험 폐지와 법전원 도입 3
2.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7

II. 사시 존치 주장의 허구성

1. 법전원의 문제점이 사시존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9
2. 사법시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다 9
3. 사법시험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시험이다 11
4. 법전원은 충분한 장학제도가 있어 실질등록금은 일반대학원 수준이다 11
5. 법전원에는 이미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많이 재학하고 있다 13
6. 법전원 입학전형은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다 14
7. 교육이 없는 사법시험이 교육이 있는 법전원제도를 보완할 수 없다 16
8. 변호사 채용 시 특혜 의혹은 법전원과는 무관한 일이다 16
9. 사법시험은 필기시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17
10. 사법시험은 소수의 특정대학 출신이 독점한다 18
11. 법전원은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다 18
12. 법전원에서는 실무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
13. 2013년에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해 재론하기로 한 바 없다 23

III. 사시 존치의 폐해

1. 학부교육의 황폐화	24
2. 법전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25
3. 변호사 배출 이원화로 인한 문제	25
4. 소수대학의 독점	26
5. 고시낭인의 발생	27
6.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양성	28

IV. 법전원의 성과

1. 법학교육의 정상화	29
2. 타전공 학부교육의 정상화	29
3. 출신대학의 다양화	30
4. 학점은행 등을 통한 법조인 진출 가능	32
5. 다양한 인재선발	33
6.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	34

V. 결론

35

[별첨자료]

37

I. 사시 폐지의 당위성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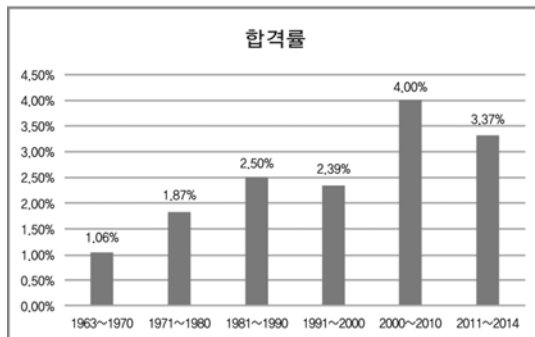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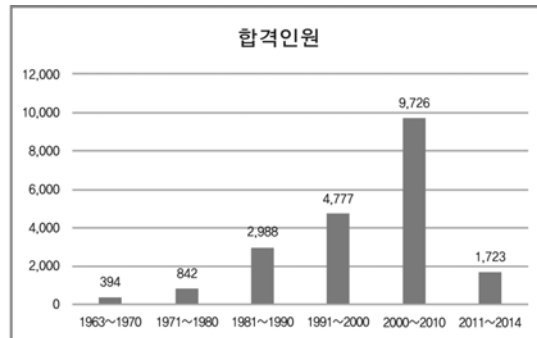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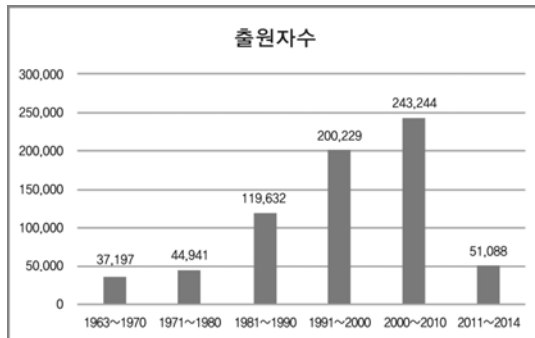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시험 폐지와 법전원 도입

□ 사법시험(1963~2014)을 통한 법조인 선발

[표 1] 사법시험 연도별 출원자수·합격인원·합격률 현황

(단위: 명)

연도	1963~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0~2010	2011~2014	합계
출원자 수	37,197	44,941	119,632	200,229	243,244	51,088	696,331
합격인원	394	842	2,988	4,777	9,726	1,723	20,450
합격률	1.06%	1.87%	2.50%	2.39%	4.0%	3.37%	2.94%



※ 사법시험 총 출원자수 : 696,331명.
 합격자수 : 20,450명
 합격률 : 2.94%

[별첨 1] 연도별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1963~2014년도) 참조 (39p)

[별첨 17] 독일에서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적도,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80p)

□ 사법시험의 폐단 발생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역량있는 법조인 배출의 한계
-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법조인으로 선발되기 힘든 구조
-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 준비로 인해 타 전공 학부교육의 황폐화
- 장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고시낭인 발생



□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연혁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법조인 배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
-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법전원의 도입 추진
 -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인한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비
 - 법조시장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비판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 1998년 교육제도 개편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구성
- 1999년 4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법전원 제도에 대한 논의 재점화

- 1999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
- 사법연수원 제도 폐지 및 한국사법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법개혁안 발표
(1999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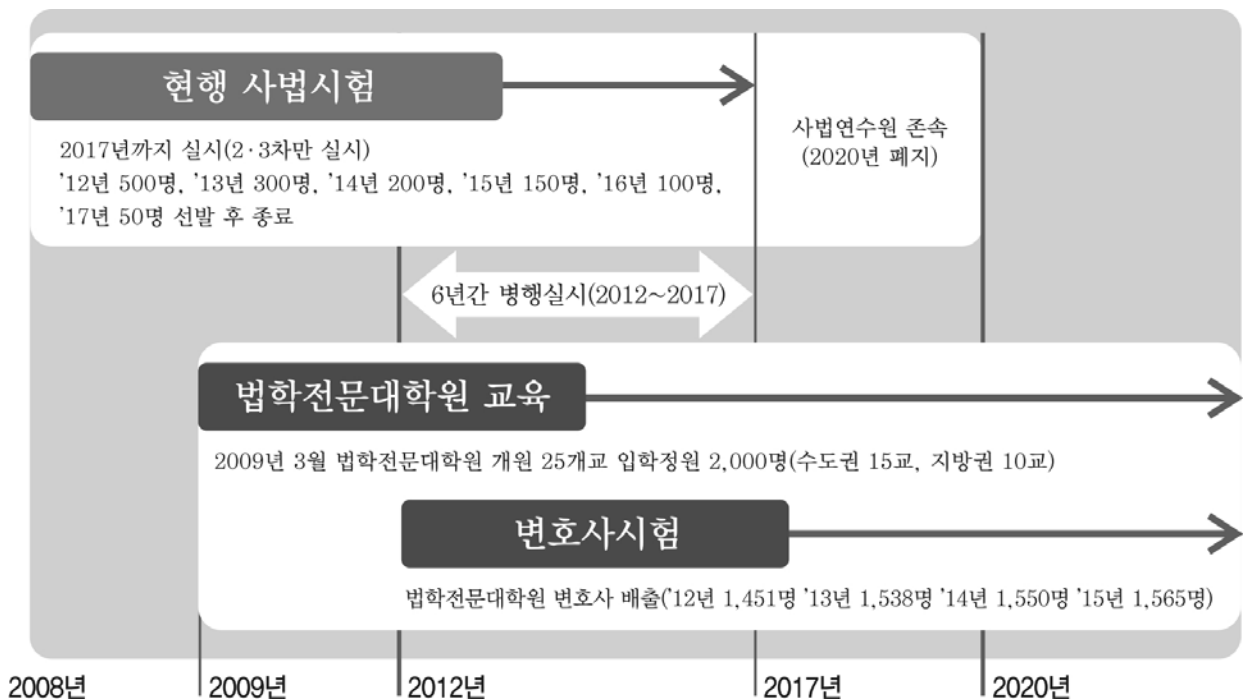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 2003년 10월 28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출범, 법전원 도입 논의 본격화
- 2004년 8월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의 입법발의 (법무부 긍정적 검토 입장발표)
- 2004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법전원 도입안 최종 확정
- 2005년 5월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 2005년 10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 2005년 10월 27일 국회 제출
- 2007년 7월 3일 일부 수정된 정부 제출안 국회 통과 [제적 18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8명, 기권 20명]
-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44호로 공포, 2007년 9월 28일 시행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10,000여쪽의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고 공청회와 토론회가 80회 이상 개최되었다.

□ 사법시험 폐지 결정

- 2009년 4월 29일 변호사시험법 제정 시 사법시험은 폐지하기로 함
[참석위원 229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5명, 기권 37명]
- 다만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법시험을 실시하기로 함
- 법전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7학년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사법시험의 평균 합격연령인 만28세에 도달하기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입학 당시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 법전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전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 변호사시험법 시행 전의 사법시험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재학생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시험 응시는 허용하되, 사법시험 응시를 변호사시험 응시로 보아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에 산입



변호사시험법

[법률 제9747호, 2009. 05. 28. 제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2009. 04. 29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참석위원 229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5명, 기권 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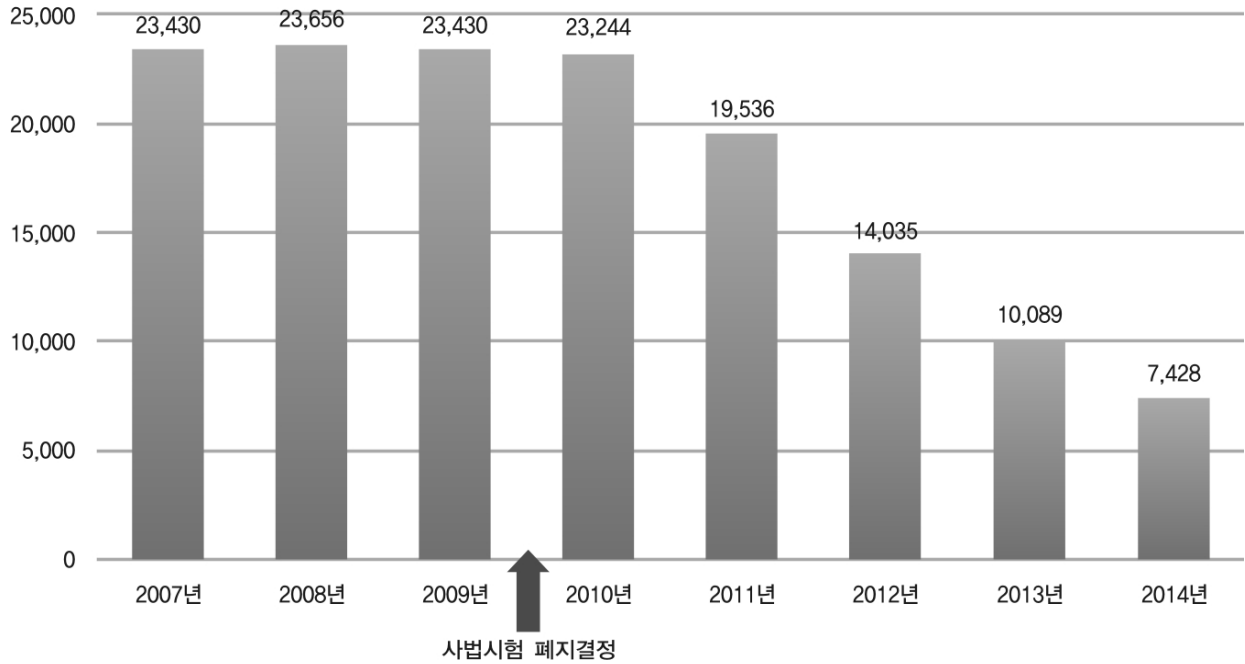
-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전원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를 금함
- 정부정책을 믿고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법전원에 입학해서 법조인이 됨
- 2008년 법전원 출범 전 23,000명 이상에 달하던 사법시험 응시생은 법전원 출범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표 2] 사법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 현황

(단위: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격 인원	1,011	1,005	997	814	707	506	306	204
응시 인원	23,430	23,656	23,430	23,244	19,536	14,035	10,089	7,428

응시 인원



-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법률을 믿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함
- 법전원을 두고 있는 25개 대학교는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했음. 이에 25개교에 입학하는 학부생들은 법과대학이 없어 다른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음

II. 사시 존치 주장의 허구성

1 법전원의 문제점이 사시존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법전원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시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법전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지 문제투성이인 사법시험이 보완책이 될 수는 없음

2 사법시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다

- 사법시험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희망의 덫’ 이거나 ‘희망고문’에 불과함
- 합격률이 고작 2.94%인 사법시험에 사회·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이 장기간 공부하고 합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2000년 이후 취약계층이 유의미한 숫자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1981~2014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등학교(졸업, 재학, 퇴학) 학력 소지자는 1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0.1%에 불과함
 - 2006년~2014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등학교 학력소지자 3명(0.05%)임

[별첨 2] 사법시험 합격자 연도별 학력 분포 현황(1981~2014년) (41p)

- 사법시험에서도 대학교육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음
 -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제1차 시험에서 어학시험은 토익 700점 이상 성적 등을 요구

[표 3] 사법시험 합격자 학력 분포 현황(1981~2014년)

(단위: 명)

구분	합격자수	학력 분포 현황				
		대학원 재학이상	대학교	3년제 이하대학	고등학교	기타
인원	19,214	3,862	15,322	9	19	2
비율	100%	20.10%	79.74%	0.05%	0.10%	0.01%

□ 반면 법전원에서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보장되고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음

- 1~4회 변호사시험에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연 평균 84명(총 334명, '11년 ~'14년)이 합격함

[표 4]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특별전형 입학자 현황표

구분	합격자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경제적 배려자	61명	75명
국가유공자·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등 사회적 배려자	4명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	

[표 5] 특별전형 입학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회진출 현황 (21개교)

구분	검사	재판 연구원	법무 법인	법률 사무소	변호사 개업	기업	공공 부문	협회	법무관	기타
2012년	2	2	24	9	3	8	15	3	4	1
2013년	1	1	22	9	2	12	4	0	6	1
2014년	2	2	19	13	0	8	9	0	5	2

[별첨 3] 특별전형 입학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회진출 현황

(21개교, 2012~2014년도) 참조 (42p)

3

사법시험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시험이다

- 사법시험은 법전원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임
- 사법시험은 평균 수학기간이 4.79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추상적인 수치일 뿐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한 사례도 적지 않으며, 특정한 기간을 들인다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닌 반면에, 법전원은 3년의 수학기간만을 필요로 하므로 3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의 기회비용(시험공부를 함으로써 소득행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취득하지 못한 소득)을 고려하면 법전원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시험임
-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원강의, 교재비, 고시원 비용 등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는 시험임
- 시험의 합격률이 너무 낮아 언제 합격할 지 모르는 사법시험은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도전을 할 수 없는 제도임

4

법전원은 충분한 장학제도가 있어 실질등록금은 일반대학원 수준이다

- 법전원의 등록금이 비싸서 돈스쿨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전원의 풍부한 장학제도를 외면한 주장임
- 2014년도 법전원 등록금 총액의 평균 37.6%인 연간 35,846백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됨
 - 전체 학생의 15.8%가 전액 장학금을 받음
 - 전체 학생의 70.6%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학금을 받음
- 2013년도 법전원의 평균등록금은 연 1,532만원이지만 등록금 총액의 40.6%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등록금은 연 894만원으로 의학전문대학원(1,230만원)의 70%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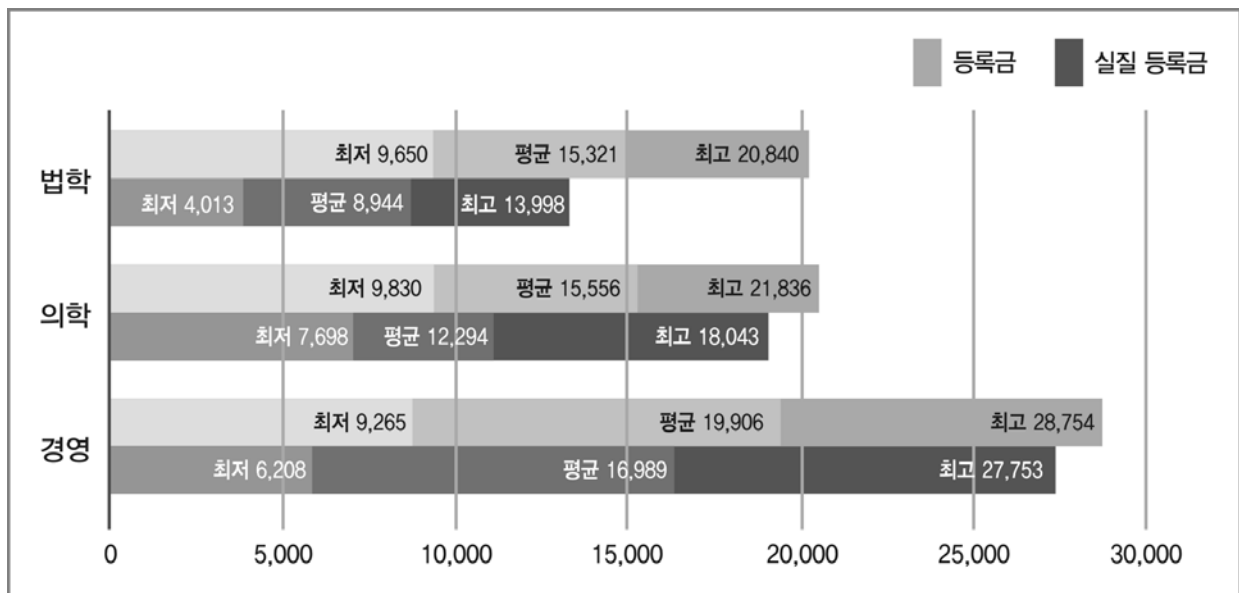
[표 6]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 (2013년도)

(단위: 천원, %)

구분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최고	20,840	11,443	74.0	13,998
	평균	15,321	6,377	40.6	8,944
	최저	9,650	2,435	23.6	4,013
의학전문대학원	최고	21,836	6,958	34.1	18,043
	평균	15,556	3,262	20.5	12,294
	최저	9,830	1,209	8.0	7,698
경영전문대학원	최고	28,754	5,760	33.0	27,753
	평균	19,906	2,916	17.2	16,989
	최저	9,265	1,001	3.5	6,208

[표 7]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2013년도)

(단위: 천 원)



[별첨 4]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입학금 제외) (2012~2015년도) 참조 (45p)

[별첨 5] 2014년도 법전원 등록금 대비 비율별 장학금 지급인원 현황 참조 (46p)

[별첨 6]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현황(인원, 금액별) (2009~2013년도) 참조 (48p)

[별첨 7]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 장학금 및 실질등록금 비교 참조 (2013년도) (49p)

5

법전원에는 이미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많이 재학하고 있다

□ 사시 존치론자들은 서민층이 법전원의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법전원 진학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법전원에는 이미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전체 학생의 20.0%에 이르고 있음

[표 8] 법전원 재학생 가구별 소득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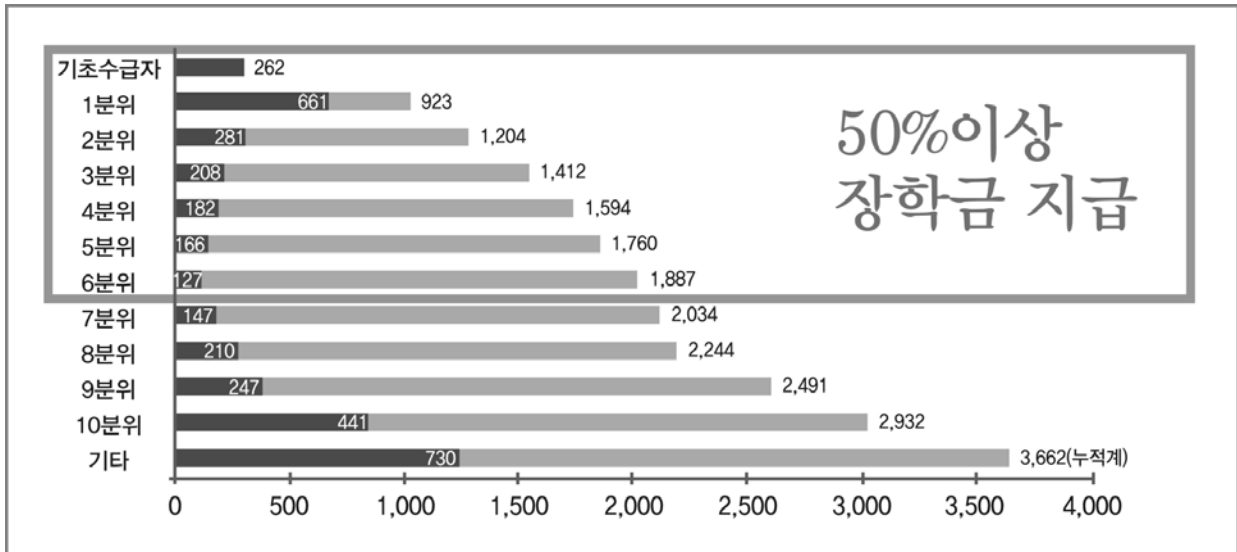
(단위: 명, %)

가구연소득	지급인원*	비율	누적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62	4.4	4.4
16,760천원 이하	661	10.9	15.3
16,760천원 초과 26,040천원 이하	281	4.7	20.0
26,040천원 초과 33,510천원 이하	208	3.5	23.5
33,510천원 초과 39,720천원 이하	182	3.0	26.5
39,720천원 초과 45,650천원 이하	166	2.7	29.2
45,650천원 초과 52,190천원 이하	127	2.1	31.3
52,190천원 초과 59,790천원 이하	147	2.5	33.8
59,790천원 초과 70,710천원 이하	210	3.5	37.3
70,710천원 초과 88,110천원 이하	247	4.1	41.4
88,110천원 초과	441	7.3	48.7
기타	730	12.1	60.8
합계	3,662	60.8	-

※ 2014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25개교) 장학금 지급 현황 기준

[표 9]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명)



[별첨 8] 2014년도 법전원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학생 수 현황 참조 (51p)

6

법전원 입학전형은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다

- 법전원 입학 전형이 필기시험 점수 이외에 면접점수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 및 대학입시 등 각종 전형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보충하기 위하여 면접 등을 통해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성평가 역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일곱번의 입시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입학전형이 불공정하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음
- 법전원의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의 감독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 입학전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두 명의 교수가 1조가 되어 학생의 성명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논술 채점을 함
- 면접위원은 외부 변호사 및 타 학과 교수 등을 포함해 3인 1조로 구성하고, 면접관은

수험생의 지원서 등 신상정보를 보지 않고 면접을 진행함

- 법전원의 입학전형은 미국 등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의 입학전형에 비추어 보아도 공평타당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음

[표 10] 전형방법 예시

전형방법 및 내용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비고
		1단계	2단계	
「인원전형」 • LEET 성적: 20점 • 대학성적: 20점 • 어학성적: 20점 • 서류평가: 25점 [합계: 85점]	「일반전형 우선선발」 • 1단계 합계점수: 85점 • 2단계 구술면접: P/F [합계: 85점]	「우선선발」 총점 순위에 따라 50명 이내 선발	「우선선발」 구술면접심사(P/F) 후 최종합격 여부 결정	• LEET 논술은 서류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 • TOEFL은 IBT만 인정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TOEIC은 인정하지 않음
	「일반전형 일반선발」 • 1단계 합계점수: 85점 • 2단계 구술면접: 15점 [합계: 100점]	「일반선발」 총점 순위에 따라 우선선발 제외한 인원의 3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특별전형」 • LEET 성적: 20점 • 대학성적: 20점 • 어학성적: P/F • 서류평가: 25점 [합계: 65점]	「특별전형」 • 1단계 합계점수: 65점 • 2단계 구술면접: 15점 [합계: 80점]	「특별전형」 총점 순위에 따라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일정 인원 선발		

[별첨 9]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반영비율(2단계) (56p)

[별첨 10] 학교별 면접 반영비율 (57p)

[별첨 11] 2016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58p)

- 최근 국회의원, 언론사에서 법전원 입학생 대부분이 30세 이하인 점을 지적하며 연령이 입학전형에 반영되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전원 입학전형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오로지 정량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음
 -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별 현황과 비교해봐도 법전원 입학생 연령별 분포는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11] 법전원 입학생 및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별 현황 비교(2009~2014년)

(단위: 명, %)

구분	법전원 입학생				사법시험 합격자			
	남	여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133	202	335	2.7	65	37	102	2.9
23 ~ 25세	1,265	2,201	3,466	28.1	491	507	998	28.2
26 ~ 28세	2,442	1,666	4,108	33.3	607	453	1,060	30.0
29 ~ 31세	1,556	726	2,282	18.5	433	235	668	18.9
32 ~ 34세	922	283	1,205	9.8	313	84	397	11.2
35세 이상	802	155	957	7.7	266	43	309	8.7
계	7,120	5,233	12,353	100.0	2,175	1,359	3,534	100.0

[별첨 12] 법전원 입학생 및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별 현황 비교 (63p)

7

교육이 없는 사법시험이 교육이 있는 법전원 제도를 보완할 수 없다

- 사시 존치론자들은 법전원 교육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교의 대상이 잘못된 것임
- 법전원이 도입됨으로써 고시원에서 시험 준비를 하던 이들이 교실에서 교육을 통해서 법학을 공부하게 된 중요한 변화가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예상답안을 단순히 외우는 공부에서 경쟁력 있는 법률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하게 되었음
-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공교육을 폄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음

8

변호사 채용 시 특혜 의혹은 법전원과는 무관한 일이다

- 사시 존치론자들은 변호사 임용 시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들의 주장은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설사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법전원 제도 자체를 타할 문제는 아님
- 연평균 43명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2010~2014년 평균) 그것을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음

[표 12] 최근 5년간 변호사 징계 현황

(단위: 건수)

연도	징계결정	정직	과태료 처분	견책	기각	각하
2010년	29	3	21	2	0	3
2011년	37	4	24	2	2	5
2012년	48	6	28	1	0	13
2013년	49	5	34	3	1	6
2014년	56	5	43	3	0	5

* 각하는 변호사법상 결격사유로 등록취소된 자임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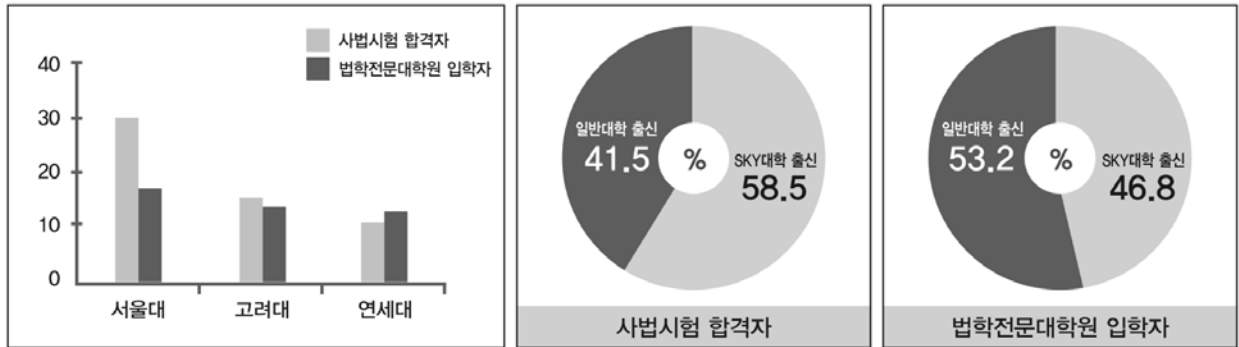
사법시험은 필기시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 사법시험이 투명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주장하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 자격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중에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필기시험만으로는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 사법시험은 시험 합격을 위해 독학으로 예상문제와 답을 외울 수 밖에 없어서 법률가로서의 기초적인 역량을 쌓기 어려운 반면, 법전원 제도에서는 교육기간 중 여러 과목에서 다양한 학습 방법(토론, 모의재판, 리걸클리닉, 인턴 등)을 통해 필요한 역량에 쌓을 수 있음

□ 법전원 입학 시 소수의 대학출신들이 독점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름

[표 13]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점유율

구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합계
사법시험합격자 10,458명(2002~2014)	3,192(30.52%)	1,717(16.42%)	1,210(11.57%)	6,119(58.5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10,410명(2011~2015)	1,856(17.83%)	1,559(14.98%)	1,456(13.99%)	4,871(46.8%)
증감율	▼12.69%	▼1.44%	▼2.42%	▼11.71%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법전원이 없는 대학의 법학전공자들이 사법시험 합격의 기회를 갖을 것으로 기대하나 실제로는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이 대부분의 합격생을 배출하게 될 것임

□ 법전원의 학사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나 법전원은 엄정한 상대평가, 유급제도, 졸업 시험과 연계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통해 재학생들의 학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엄정한 학사관리

○ 강력한 유급제도 시행, 성적 절대평가 폐지, 모든 과목 엄정한 상대평가

- 상대평가 시 학점인플레 방지를 위한 엄격한 배분비율 설정
- 재학년한 최대 5년 이후 자동 제적

[표 14] 3기 법전원생의 유급 및 졸업시험 탈락자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인원(명)	60명	18명	17명 유급+90명 졸업시험 탈락	185명
입학정원 대비	3%	0.9%	5.35%	9.25%

[별첨 13] 2014학년도 법전원별 재학생 학사경고, 유급 현황 참조 (68p)

□ 모의시험을 통한 학업 성취도 평가

-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론, 실무),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헌법재판소, 경찰청, 로펌변호사 등 100여명의 출제위원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출제
-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출제진의 해설, 출제의도 및 문항별 정답률 공개
- 모의시험 출제진들이 직접 작성한 해설집 발간을 통한 체계적 학습기회 제공

[표 15] 연도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횟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행횟수	1회 (7월)	2회 (8, 10월)	3회 (6, 8, 10월)	3회 (6, 8, 10월)	3회 (6, 8, 10월)

12

법전원에서는 실무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법전원에 실무교원이 부족하고 실무교육이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름
-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실무경력 교원 비율이 전임교원의 20% 이상인 42.3%가 확보됨

[표 16] 2012년도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결과

(단위: 명)

구분	법정전임 교원수 (A)	법조실무 경력 전임교원수 (B)	확보율 (B/A)×100	구분	법정전임 교원수 (A)	법조실무 경력 전임교원수 (B)	확보율 (B/A)×100
강원대	20	9	45.0%	영남대	20	11	55.0%
건국대	20	8	40.0%	원광대	20	10	50.0%
경북대	30	11	36.7%	이화여대	25	11	44.0%
경희대	20	9	45.0%	인하대	20	6	30.0%
고려대	30	15	50.0%	전남대	30	7	23.3%
동아대	20	13	65.0%	전북대	20	8	40.0%
부산대	30	13	43.3%	제주대	20	7	35.0%
서강대	20	6	30.0%	중앙대	20	7	35.0%
서울대	38	18	47.4%	충남대	25	10	40.0%
서울시립대	20	7	35.0%	충북대	20	6	30.0%
성균관대	30	18	60.0%	한국외대	20	8	40.0%
아주대	20	8	40.0%	한양대	25	12	48.0%
연세대	30	13	43.3%	합계	593	251	42.3%

□ 법전원은 판사 및 검사 등 법조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연구 및 강의능력이 뛰어난 현직 법조인을 교원으로 활용하여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실무교육 내실화를 기함

[표 17] 2015년도 각 기관 파견 교수현황

구분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경찰청
1학기	민사재판실무 (25개교 11명)	검찰실무 (25개교 8명)	경찰실무 (9개교 4명)
2학기	형사재판실무 (25개교 11명)	검찰실무 (25개교 8명)	경찰실무 (16개교 7명)

□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관에서 실무수습 기회 제공

- 법전원협의회에서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경찰청, 국세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

- 25개 법전원에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 국내·외 권위있는 협력기관과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기회 제공

[표 18] 각 기관별 실무수습 현황

구분		실습 기간	실습 장소	실습 대상	실습 인원
법원	기본과정	2015. 1월(2주)	각급 법원	4학기 이상	약 250명
	심화과정	2015. 1~2월(4주)			약 250명
국회	제1차	2016. 1~2월(2주)	국회 의정관 및 상임위 등	3학기 이상	약 60명
국세청	하계	2015. 7월(2주)	법전원 소재 지방청	2학기 이상	약 40명
	동계	2016. 1월			약 40명
경찰청	하계	2015. 7월(2주)	지방청, 경찰서 등	2학년 이상	지원자 최대 수용
	동계	2016. 1~2월			
사법연수원	하계	민·형사 기초 / 민사 심화 / 형사 심화 각 2015. 7월(1주)	사법연수원	2, 3학년	지원자 최대 수용
국방부	하계	2015. 7월(12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2, 3학년	법전원별 1~2명
	동계	2016. 2월			

* 이 외에도 검찰, 로펌, 국가기관 등에서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음.

□ 리걸클리닉에서 다양한 소송과 법률상담을 경험

- 복잡다기한 법적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무교육 역량강화방안의 하나로 리걸 클리닉을 운영함

[표 19] 연도별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법률상담	1,591건	2,084건	2,531건
소송	147건	299건	345건

[참고] 리걸클리닉 주요 활동 예시

□ 지역사회 및 무변촌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공익성

- 공익변호사모임 ‘위안’과 연계, 태안 해병대 캠프 실종사고(’13. 07.) 유가족 법률지원 [고려대]
- 참법률지원단(전공교수, 지도변호사, 학생)이 무변촌에서 법률상담 실시 [중앙대]

□ 사회적 취약계층의 우선적 처우

- ‘노숙인다시서기센터’와 정기적으로 무료법률상담 실시 [연세대]
- 배달청소년 노동자 지원(배달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불합리한 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유관기관에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현황 알리는 등) [전남대]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기타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이화여대]
- 난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난민인정을 위한 법적 절차 및 난민소송 수행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위한 ‘난민클리닉 개설’ [한국외대]

□ 공익사건의 발굴 및 수행

- 장애우 관련(장애등급 심사) 소송, 환경관련 사건의 공익사건 수행 [강원대]
- 공익인권클리닉(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 등 소송지원) 운영 [고려대]
-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및 특성화사업의 활동,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법률상담 등을 통해 공익소송 발굴·수행 [전남대]
- 재학생들의 법률지원을 통해 리걸클리닉 공익소송 국내 첫 승소(채무부존재확인) [한양대]

□ 학교별 특성화와 연계된 리걸클리닉 운영

- 아주대(중소기업법무) :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법률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대상 외부 현장 리걸클리닉 실시, 계약서 검토 등 법률문제 사전 예방
- 이화여대(생명의료법, 젠더법) : 젠더법클리닉을 설치하여 여성인권과 관련된 실제 사건
- 한국외대(국제지역법) : 국제난민지원 NGO인 ‘피난처’와의 소송전략의 수립·운영

- 2009년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시험 법안 논의시 2013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사법 시험 존치여부가 아닌 예비시험이다

제282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2009. 04. 29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주영 의원 보고 부분

“〈전략〉

한편, 예비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파행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 또 고시 낭인의 양산 우려, 가난한 사람의 등용문으로 예비시험제를 두자는 취지와는 달리 로스쿨 3년 장기 교육을 피해서 단기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부자들이 사교육을 통해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질 우려가 큰 점 등 현행 사법 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반영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시험 제도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 대학원의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서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별첨 14] 제282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2009. 04. 29) 中 변호사시험법안 심의 관련 부분 참조(69p)

Ⅲ. 사시 존치의 폐해

1

학부교육의 황폐화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학생들이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 되어 각자의 전공공부를 소홀히 하여 학부교육이 황폐화 될 것임
- 사시폐지의 이유였던 고시망국론이 재현될 것임

▣ 법대 ‘썰렁’ 고시원 ‘북적’(한겨레, 1995. 02. 18.)

“대다수 법대생이 학교수업을 소홀히 한 채 저학년 때부터 고시전문학원에서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 법과대학이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간 생략> 법대 입학동기 2백70명 가운데 2백명 가량이 이미 고시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3·4학년생들은 아예 학교수업을 빼먹고 고시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다.” <중간 생략> 학원에는 법과대학 교수, 현직 판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생까지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대교육의 파행적인 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시열풍에 멍든 대학(동아일보, 1996. 12. 26)

“서울대 고시학원化” 비판의 소리

고시과목 수강생 60%가 法大의 학생

이 없고 고시과목이나 법대 과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들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崔大權교수 논문서 지적

“법대에 들어오면 1학년 때부터 사시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고 있다. 대다수 법대생이 학교수업을 소홀히 한 채 저학년 때부터 고시전문학원에서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 법과대학이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李激容기자)

[별첨 18] 성공적인 로스쿨 체제를 사시존치 주장으로 혼드는 이유가 나변(那邊)에 있는가? (82p)

2

법전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 사법시험이 지속되면 법전원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를 막을 합리적 근거가 없음
- 법전원 재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임
 - 법전원 재학생들이 사법시험 준비를 하면 법전원 수업을 등한시 하게 되어 법전원 수업 분위기를 해치게 됨
 - 사법시험 합격으로 인한 자퇴가 발생한 경우 충원이 어렵게 되어 특히 소규모 법전원의 경우 폐강과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
 - 법전원 설립 취지인 국제화, 특성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취지가 훼손됨

3

변호사 배출 이원화로 인한 문제

- 사시 존치론자들은 법전원 출신 변호사와 사시 출신 변호사가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전에도 변호사들 사이에 편차가 존재했으며, 현재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의 사법서비스 제공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경쟁은 시장에서 개별 변호사의 역량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시험 출신인 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님
- 법전원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면 법전원 출신 변호사 집단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집단 간의 갈등이 구조화되고 공고화되어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저해함
- 사법시험 합격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게 되어 양자 간의 불균형 발생
- 동일한 전문자격 취득하는 데 있어 일방에게만 국가재정이 지출되는 불평등한 상황 발생
- 사시 존치론자들이 예를 들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변호사 선발과 법관 선발이 구별된 제도인 것으로, 애초에 동일한 자격을 갖는 사람들을 다른 제도를 통해 선발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지방 분산에 역행

-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지방 대학생들이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이 합격생을 배출하게 됨
- 법전원을 통해 다수의 법률가가 배출되어야 지방 대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짐
- 사법시험은 신림동에서 수험하게 되나 법전원의 절반은 전국에 흩어져 있음

[표 20] 권역별 법전원 현황

(단위: 명)

권역	인가대학수 (입학정원)	대학명	입학 정원	권역	인가대학수 (입학정원)	대학명	입학 정원		
서울 권역	15개교 (1,140명)	건국대	40	대전 권역	2개교 (170명)	충남대	100		
		경희대	60			충북대	70		
		고려대	120			전남대	120		
		서강대	40	광주 권역	4개교 (300명)	원광대	60		
		서울대	150			전북대	80		
		성균관대	120			제주대	40		
		서울시립대	50			대구 권역	2개교 (190명)	경북대	120
		연세대	120					영남대	70
		이화여대	100					부산 권역	2개교 (200명)
		중앙대	50	부산대	120				
		한국외대	50						
		한양대	100						
		아주대	50						
		인하대	50						
		강원대	40						
서울권역 합계			1,140	지방 4대권역 합계			860		

[표 21] 10대 대학 점유율 비교

상위 10개 대학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2002-201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10,410명(2011-2015)		증감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	3,192	30.52%	1,856	17.83%	▼12.69%
고려대	1,717	16.42%	1,559	14.98%	▼1.44%
연세대	1,210	11.57%	1,456	13.99%	▲2.42%
성균관대	705	6.74%	678	6.51%	▼0.23%
한양대	642	6.14%	592	5.69%	▼0.45%
이화여대	540	5.16%	686	6.59%	▲1.43%
부산대	274	2.62%	222	2.13%	▼0.49%
중앙대	195	1.86%	208	2.00%	▲0.14%
경북대	191	1.83%	197	1.89%	▲0.06%
경희대	188	1.80%	301	2.89%	▲1.09%
합계	8,854(84.66%)		7,755(74.50%)		▼10.16%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8,85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84.66%를 차지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10,410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7,755명으로 전체 입학자 중 74.5%를 차지했다. (▼10.16%(P))

5

고시낭인의 발생

- 사법시험이 존속되면 무한정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낭인의 발생이 필연적임
- 법전원 진학 희망자는 자신의 전공을 열심히 공부함으로 법전원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진로로의 선택이 수월한 반면, 사법시험 준비생은 학부공부를 등한시하고 시험 준비만 하게 되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진로로 진출하기가 어려워 계속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 명문대에 입학하여 주변의 기대를 받고 고시공부를 하다가 불운하게도 결과가 좋지 않아 미래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사회 문제를 양산함

- 사법시험이 존치하게 되면 사법연수원 운영을 위하여 국가재정을 사용하게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양성하게 됨
- 만약 사법시험으로 매년 200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사법연수원생 및 교원 인건비로 약 143억원이 매년 지출될 것으로 추정됨(1,000명 운영 시 500억 소요되었음)

[표 22] 사법연수원 인건비 추정금액

(단위: 천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사법연수원생 인건비	(1년차) 200명 × 1,738천원 × 12개월 = 4,171,200천원 (2년차) 200명 × [(1,816천원 × 12개월) + {90,800원(정근수당) × 2} + 364,980 (봉급조정수당)] = 4,467,716천원	8,638,916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교원인건비	교원 42(명), 직원 30(명) = 57억	5,700,000	
합 계		14,338,916	

- ※ 1) 시설관리비 미포함
- 2) 교원 1인당 인건비 1억 추정 (3급 20호봉이상 추정)

-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대다수가 판·검사 등 공직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연수기간 동안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IV. 법전원의 성과

1

법학교육의 정상화

- 수험 법학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패러다임 전환, 고시원에서 이루어지던 법학공부가 법전원 도입으로 교실 안으로 들어오게 됨
- 전문직 교육은 ‘지식습득’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두 단계로 이루어짐. 사시제도 하에서는 이 중 독학으로 ‘지식습득’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어 법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음
- 법전원체제 하에서 비로소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짐. 즉 교수와 학생간의 질의응답, 토론, 모의재판, 리걸 클리닉, 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짐
- 법학이론과목과 실무과목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므로써 ‘지식습득’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짐
- 학생들의 학교수업에 대한 신뢰증가
 - 교수의 수업충실도 향상
 - 학생의 출석률 향상

2

타전공 학부교육의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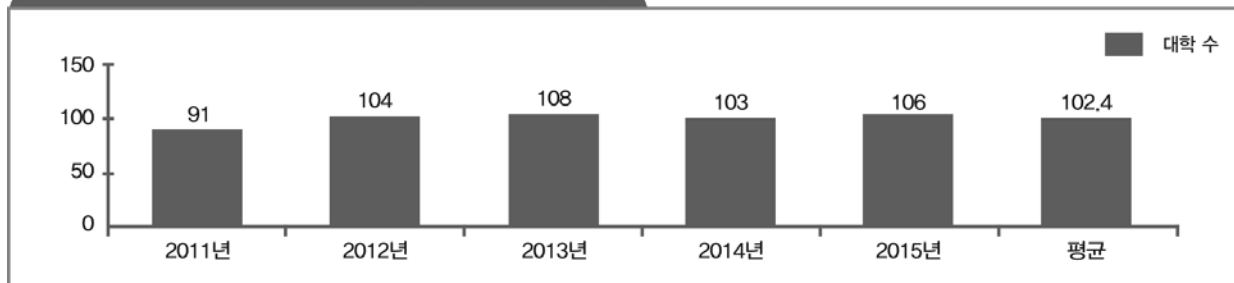
- 학부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사법시험 공부에 매달리는 대신 각자의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어 타전공 학부교육이 정상화됨
- 다양한 전공을 제대로 공부한 이들이 법전원에 입학함으로써 법률가의 잠재력 역량이 증대됨

-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교에 비해 법전원 합격자 배출이 다양화 됨
-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평균 102.4개 대학에서 입학생 배출
 - 사법시험은 매년 평균 40.6개 대학에서 합격자 배출

[표 2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총 수

2011~201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VS	2002~2014 사법시험 합격자	
지 역	출신대학 수		지 역	출신대학 수
서울	34개	서울	25개	
경기/강원	20개	경기/강원	15개	
충청	19개	충청	11개	
경상	27개	경상	18개	
전라/제주	13개	전라/제주	11개	
계	113개	계	80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대학 수(2011년~2015년)



[표 24] 10개 대학별 현황

상위 10개 대학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2002~201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10,410명(2011~2015)		증감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	3,192	30.52%	1,856	17.83%	▼12.69%
고려대	1,717	16.42%	1,559	14.98%	▼1.44%
연세대	1,210	11.57%	1,456	13.99%	▲2.42%
성균관대	705	6.74%	678	6.51%	▼0.23%
한양대	642	6.14%	592	5.69%	▼0.45%
이화여대	540	5.16%	686	6.59%	▲1.43%
부산대	274	2.62%	222	2.13%	▼0.49%
중앙대	195	1.86%	208	2.00%	▲0.14%
경북대	191	1.83%	197	1.89%	▲0.06%
경희대	188	1.80%	301	2.89%	▲1.09%
합계	8,854(84.66%)		7,755(74.50%)		▼10.16%

※ 상위 10개 대학의 점유율이 낮아짐

□ 지방대학의 비중이 확대

- 출신 대학의 2.5배 다양화(연평균 40.6개교→102.4개교)
- 지방대학 출신 60% 증가(12.03%→19.68%)

□ 지역인재들의 법조인 진입장벽이 낮아짐

- 2015학년도부터 도입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 인재 일정비율 선발을 통해 180명 입학(강원·제주: 정원의 10%, 그 외 지역: 정원의 20%)

[표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발 현황

대학명	입학정원	선발현황	
		인원(명)	비율(%)
강원대	40	4	10.00
경북대	120	28	23.33
동아대	80	22	27.5
부산대	120	27	22.50
영남대	70	12	17.14
원광대	60	13	21.67
전남대	120	28	23.33
전북대	80	13	16.25
제주대	40	2	5.00
충남대	100	19	19.00
충북대	70	12	17.14
계	900	180	19.89

4

학점은행 등을 통한 법조인 진출 가능

- 방송통신대·독학사·학점은행·사이버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법전원에 입학한 사람 (57명)은 사법시험 합격자(20명)보다 2.8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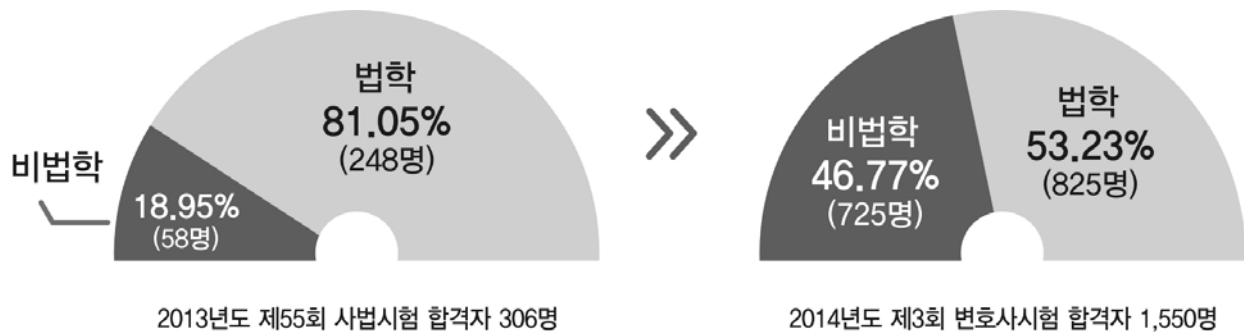
서민층 및 출신대학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법전원제도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별첨 15] 법전원 VS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비교 참조 (7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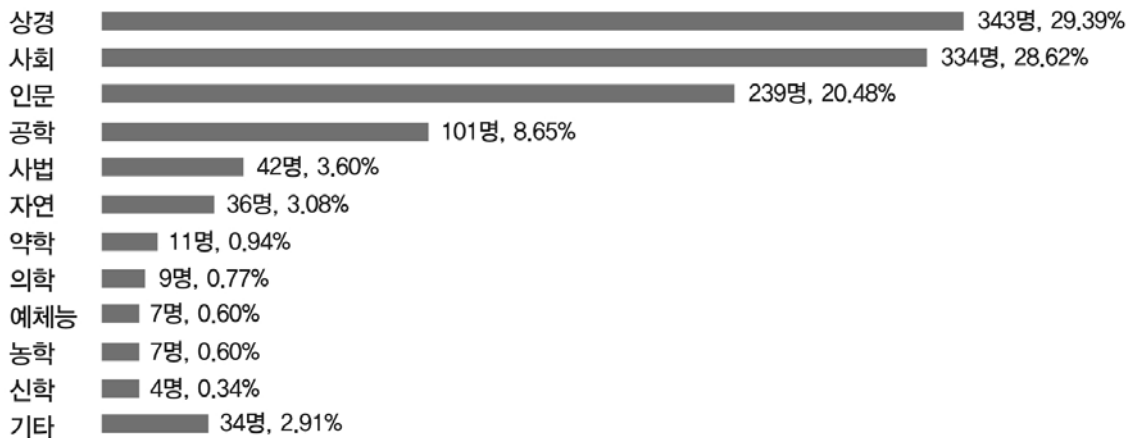
- 법전원에는 지난 6년간 평균 53.2%(6,615명)의 비법학 전공자들이 입학,
 -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 출신 비율은 56.0%(2,541)에 달해
 - 사법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 출신은 18.95%에 그쳐

[표 26]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합격자 전공현황 비교

(단위: %)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2,084명 중 비법학사 1,167(56%)의 계열별 현황 분석



-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향해사, 공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과 자격을 갖춘 이들이 법전원에 진출,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고 있음

- 법전원 출신 변호사는 다양한 학부전공과 사회경력을 통해 기존 법조인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 법전원 제도를 통해서는 기업, 공공기관 등 취업률이 29.5%로 나타나며 사법시험 제도와는 10% 가량 차이가 남. 공기업, 사기업, 공공단체, 국가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실현함

[표 27]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43기 사법연수생의 분야별 취업률(2014. 12월 기준)

구분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인원	비율(%)	취업인원	비율(%)
법원	46명	6.1	58명	4.2
검찰	40명	5.3	35명	2.5
변호사	377명	49.9	781명	56.6
법무관	179명	23.7	141명	10.2
공공기관	39명	5.2	141명	10.2
기업 등	74명	9.8	225명	16.3
총계	755명	100.0	1,381명	100.0

[별첨 16] 연도별 법전원 취업률 현황(2012~2014년도) 참조 (79p)

V. 결론

1.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역량있는 변호사를 양성해나갈 것이다.
3. 정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별첨 자료

[별첨 1] 연도별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1963~2014년도)	39
[별첨 2] 사법시험 합격자 연도별 학력 분포 현황(1981~2014년)	41
[별첨 3] 특별전형 입학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회진출 현황(21개교, 2012~2014년도)	42
[별첨 4]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입학금 제외) (2012~2015년도)	45
[별첨 5] 2014년도 법전원 등록금 대비 비율별 장학금 지급인원 현황	46
[별첨 6]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현황 (인원, 금액별) (2009~2013년도)	48
[별첨 7]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 장학금 및 실질등록금 비교	49
[별첨 8] 2014년도 법전원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학생 수 현황	51
[별첨 9]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반영비율(2단계)	56
[별첨 10] 학교별 면접 반영 비율	57
[별첨 11] 2016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58
[별첨 12] 법전원 입학생 및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별 현황 비교	63
[별첨 13] 2014학년도 법전원별 재학생 학사경고, 유급 현황	68
[별첨 14] 제282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09. 04. 29) 中 변호사시험법안 심의 관련 부분 ...	69
[별첨 15] 법전원 VS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비교	77
[별첨 16] 연도별 법전원 취업률 현황(2012~2014년도)	79
[별첨 17] 독일에서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적도,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80
[별첨 18] 성공적인 로스쿨 체제를 사시존치 주장으로 흔드는 이유가 나변(那邊)에 있는가? ..	82

별첨 1

연도별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1963~2014년도)

(단위: 명)

연도	출원자수	최종합격자수	최종합격률
1963	4,176	41	0.98%
1963	3,732	45	1.21%
1964	4,969	10	0.20%
1964	4,214	22	0.52%
1965	2,141	16	0.75%
1966	2,370	19	0.80%
1967	2,820	5	0.18%
1967	2,466	83	3.37%
1968	2,599	37	1.42%
1969	2,363	34	1.44%
1970	2,561	33	1.29%
1970	2,786	49	1.76%
1971	2,776	81	2.92%
1972	3,514	80	2.28%
1973	4,072	60	1.47%
1974	4,010	60	1.50%
1975	4,119	59	1.43%
1976	4,498	61	1.36%
1977	4,119	80	1.94%
1978	5,387	100	1.86%
1979	5,788	120	2.07%
1980	6,658	141	2.12%
1981	7,983	289	3.62%
1982	9,272	300	3.24%
1983	9,785	300	3.07%
1984	11,600	303	2.61%
1985	11,743	298	2.54%

연도	출원자수	최종합격자수	최종합격률
1986	13,635	300	2.20%
1987	14,252	300	2.10%
1988	13,568	300	2.21%
1989	13,429	300	2.23%
1990	14,365	298	2.07%
1991	15,540	287	1.85%
1992	16,424	288	1.75%
1993	18,232	288	1.58%
1994	19,006	290	1.53%
1995	20,737	308	1.49%
1996	22,771	502	2.20%
1997	20,551	604	2.94%
1998	20,755	700	3.37%
1999	22,964	709	3.09%
2000	23,249	801	3.45%
2001	27,625	991	3.59%
2002	30,024	998	3.32%
2003	30,146	906	3.01%
2004	18,894	1,009	5.34%
2005	21,585	1,001	4.64%
2006	21,210	994	4.69%
2007	23,430	1,011	4.31%
2008	23,656	1,005	4.25%
2009	23,430	997	4.26%
2010	23,244	814	3.50%
2011	19,536	707	3.62%
2012	14,035	506	3.61%
2013	10,089	306	3.03%
2014	7,428	204	2.75%
합계	696,331	20,450	2.94%

별첨 2

사법시험 합격자 연도별 학력 분포 현황(1981~2014년)

(단위: 명)

연도	회수	합격자수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기타
			졸	재	졸	재	퇴	졸	재	퇴	졸	재	퇴	
1981	23	289	33	47	169	36	1	0	0	0	3	0	0	0
1982	24	300	44	79	124	45	4	1	1	0	1	0	0	1
1983	25	300	38	99	91	68	0	0	0	0	2	0	1	1
1984	26	303	53	85	83	81	0	0	0	0	1	0	0	0
1985	27	298	34	100	104	60	0	0	0	0	0	0	0	0
1986	28	300	50	84	104	61	1	0	0	0	0	0	0	0
1987	29	300	125		130	43	0	0	0	0	2	0	0	0
1988	30	300	139		121	38	0	0	0	0	2	0	0	0
1989	31	300	113		151	36	0	0	0	0	0	0	0	0
1990	32	298	121		136	41	0	0	0	0	0	0	0	0
1991	33	287	102		132	53	0	0	0	0	0	0	0	0
1992	34	288	91		159	38	0	0	0	0	0	0	0	0
1993	35	288	91		132	65	0	0	0	0	0	0	0	0
1994	36	290	64		166	60	0	0	0	0	0	0	0	0
1995	37	308	95		168	45	0	0	0	0	0	0	0	0
1996	38	502	116		312	74	0	0	0	0	0	0	0	0
1997	39	604	131		370	101	0	2	0	0	0	0	0	0
1998	40	700	137		415	148	0	0	0	0	0	0	0	0
1999	41	709	120		431	158	0	0	0	0	0	0	0	0
2000	42	801	132		470	199	0	0	0	0	0	0	0	0
2001	43	991	187		603	200	0			1			0	
2002	44	999	159		612	227	0			1			0	
2003	45	905	168		483	254	0			0			0	
2004	46	1,009	147		549	311	2			0			0	
2005	47	1,001	136		489	373	1			2			0	
2006	48	994	133		496	365	0			0			0	
2007	49	1,011	131		483	397	0			0			0	
2008	50	1,005	131		490	383	0			1			0	
2009	51	997	122		503	370	2			0			0	
2010	52	814	67		350	395	0			2			0	
2011	53	707	69		340	298	0			0			0	
2012	54	506	41		213	252	0			0			0	
2013	55	306	26		147	133	0			0			0	
2014	56	204	22		110	72	0			0			0	
합계		19,214	3,862		9,836	5,486	9			19			2	
비율		100.00%	20.10%		51.19%	28.55%	0.05%			0.10%			0.01%	

별첨 3

특별전형 입학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회진출 현황(21개교, 2012~2014년도)

(단위: 명)

학교명	연도	변호사시험합격자	취업자														미취업자		
			검사	판사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개업	기업	공공부문					협회및사회단체	법무관(군/공의)	기타	병역및진학등	연수등미취업자
										중앙행정기관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	기타공공분야					
강원대	20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2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2014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건국대	2012	2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20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북대	2012	4	0	0	0	2	1	1	0	0	0	0	0	0	0	0	0	0	0
	2013	5	0	0	1	0	3	0	0	0	0	0	0	0	1	0	0	0	0
	2014	4	0	0	0	1	0	0	2	0	0	0	0	0	0	0	0	0	1
경희대	2012	4	0	0	0	2	1	0	1	0	0	0	0	0	0	0	0	0	0
	2013	4	0	0	0	3	1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4	0	0	0	1	1	0	0	0	0	0	1	0	1	0	0	0	0
고려대	2012	4	0	0	0	2	1	0	0	0	0	1	0	0	0	0	0	0	0
	2013	5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3
	2014	5	0	0	1	2	0	0	2	0	0	0	0	0	0	0	0	0	0
동아대	2012	6	0	0	0	0	0	1	0	1	0	0	0	4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2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부산대	2012	4	0	0	0	3	1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4	0	0	0	1	1	0	0	0	0	0	0	0	2	0	0	0	0
	2014	3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1
서강대	20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2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2014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서울대	2012	9	2	0	0	4	0	0	0	0	1	0	1	0	1	0	0	0	0
	2013	7	1	0	0	2	0	0	3	0	0	0	0	0	0	0	0	0	1
	2014	9	1	0	0	3	0	0	2	0	0	0	0	0	2	0	1	0	0

학교명	연도	변호사시험합격자	취업자														미취업자		
			검사	판사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개업	기업	공공부문					협회및사회단체	법무관(군/공익)	기타	병역및진학등	연수등미취업자
										중앙행정기관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	기타공공분야					
성균관대	2012	5	0	0	0	2	0	0	1	0	0	0	0	0	1	1	0	0	0
	2013	5	0	0	0	2	0	0	2	1	0	0	0	0	0	0	0	0	0
	2014	5	0	0	1	1	1	0	0	0	0	0	0	0	0	1	1	0	0
연세대	20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영남대	2012	4	0	0	1	1	0	0	1	0	0	0	0	0	0	0	1	0	0
	201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2014	5	0	0	0	1	2	0	0	0	2	0	0	0	0	0	0	0	0
원광대	2012	4	0	0	0	1	0	0	0	0	0	0	0	1	0	2	0	0	0
	2013	3	0	0	0	0	1	0	0	0	0	0	0	1	0	1	0	0	0
	2014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이화여대	2012	6	0	0	0	0	0	0	2	2	0	0	0	0	0	0	0	0	2
	2013	4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1
	2014	5	0	0	0	2	1	0	1	0	0	0	0	0	1	0	0	0	0
인하대	2012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2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2014	2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전남대	2012	8	0	0	1	1	2	1	0	1	0	1	0	0	1	0	0	0	0
	2013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6	0	0	0	3	2	0	0	0	0	0	0	0	0	0	0	0	1
중앙대	2012	2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4	0	0	0	2	0	0	1	0	0	0	0	0	1	0	0	0	0
	2014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남대	2012	3	0	0	0	0	2	0	0	0	0	0	1	0	0	0	0	0	0
	2013	6	0	0	0	4	0	2	0	0	0	0	0	0	0	0	0	0	0
	2014	3	0	0	0	2	0	0	1	0	0	0	0	0	0	0	0	0	0
충북대	2012	2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2013	4	0	0	0	1	0	0	0	0	1	1	0	0	1	0	0	0	0
	2014	2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학교명	연도	변호사시험합격자	취업자														미취업자		
			검사	판사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개업	기업	공공부문					협회및사회단체	법무관(군/공익)	기타	병역및진학등	연수등미취업자
										중앙행정기관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	기타공공분야					
한국외대	2012	2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2013	2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2014	2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한양대	2012	4	0	0	0	3	0	0	1	0	0	0	0	0	0	0	0	0	0
	2013	3	0	0	0	2	0	0	1	0	0	0	0	0	0	0	0	0	0
	2014	2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합계	2012	74	2	0	2	24	9	3	8	4	1	2	3	5	3	4	1	1	2
	2013	64	1	0	1	22	9	2	12	1	1	1	0	1	0	6	1	0	6
	2014	64	2	0	2	19	13	0	8	4	2	1	1	1	0	5	2	1	3

별첨 4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 (입학금 제외) (2012~2015년도)

(단위: 천원)

학교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강원대	9,478	9,760	10,050	10,050
건국대	15,456	15,456	16,970	16,970
경북대	10,142	10,142	10,344	10,344
경희대	19,396	19,978	19,978	19,978
고려대	20,138	20,138	20,742	20,742
동아대	18,731	18,710	18,710	18,709
부산대	<u>9,478(최저)</u>	9,746	9,792	9,908
서강대	16,538	17,298	17,956	18,352
서울대	13,500	13,466	13,432	13,392
서울시립대	10,040	10,040	10,040	10,040
성균관대	<u>20,840(최고)</u>	<u>20,840(최고)</u>	<u>21,464(최고)</u>	<u>21,892(최고)</u>
아주대	19,352	19,952	19,952	19,952
연세대	20,476	20,476	20,476	20,476
영남대	18,916	18,916	18,916	18,916
원광대	16,000	16,000	16,000	16,000
이화여대	18,000	18,630	19,188	19,188
인하대	18,702	18,702	18,702	19,150
전남대	10,076	10,376	10,376	10,376
전북대	10,040	10,312	10,312	10,406
제주대	10,000	10,300	10,300	10,546
중앙대	17,500	17,500	18,900	19,352
충남대	9,648	<u>9,648(최저)</u>	<u>9,648(최저)</u>	<u>9,648(최저)</u>
충북대	9,824	9,824	9,824	9,824
한국외대	17,600	17,600	18,110	18,110
한양대	19,224	19,224	19,704	20,136
전체평균	15,164	15,321	15,595	15,698

별첨 5

2014년도 법전원 등록금 대비 비율별 장학금 지급인원 현황

(단위: 천원, 명)

구분	장학금 지급내역 (천원, %)			장학금 지급비율별 인원 (명)**												재학 생수
	총 등록금 총액 (A)	총 장학금 지급액 (B)	장학금 지급율 (B/A)	100 % (전 액)	90% 이상 ~ 100 % 미만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50% 이상 ~ 6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 10% 미만	합계	
강원대	1,238,245	286,099	23.1%	15	0	0	0	0	5	10	3	5	18	12	66	122
건국대	2,187,433	1,112,377	50.9%	12	0	0	19	0	30	0	0	29	32	0	120	125
경북대	3,766,853	916,101	24.3%	26	2	2	3	6	19	47	16	16	46	12	194	362
경희대	3,907,687	1,032,794	26.4%	13	0	0	3	12	23	29	22	2	0	0	103	191
고려대	7,769,032	2,483,797	32.0%	54	2	0	0	0	64	11	12	78	9	0	229	367
동아대	4,558,038	1,554,892	34.1%	23	0	1	7	8	3	57	9	110	15	0	231	240
부산대	3,540,760	1,166,422	32.9%	63	1	0	0	0	1	105	3	2	14	43	231	359
서강대	2,245,284	820,005	36.5%	36	0	0	0	0	19	0	0	0	1	0	55	122
서울대	6,150,319	2,300,419	37.4%	93	13	11	10	6	35	8	10	1	0	0	183	454
시립대	1,511,680	713,106	47.2%	21	22	0	0	0	44	1	1	2	13	31	134	150
성균 관대	7,963,144	2,977,655	37.4%	55	0	0	5	42	39	32	64	3	32	13	282	365
아주대	3,134,126	964,990	30.8%	10	0	0	10	0	44	0	0	38	2	0	103	157
연세대	7,495,240	2,502,992	33.4%	71	1	6	13	4	24	9	32	25	3	5	190	356
영남대	4,014,959	1,976,881	49.2%	52	1	0	16	0	24	37	22	35	0	25	210	209
원광대	2,956,000	1,319,700	44.6%	38	1	5	9	6	17	9	43	12	10	1	148	181

구분	장학금 지급내역 (천원, %)			장학금 지급비율별 인원 (명)**												재학 생수
	총 등록금 총액 (A)	총 장학금 지급액 (B)	장학금 지급율 (B/A)	100 % (전 액)	90% 이상 ~ 100 % 미만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50% 이상 ~ 6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 10% 미만	합계	
이화 여대	6,067,672	2,505,290	41.3%	41	19	0	3	49	1	3	104	1	1	3	223	310
인하대	2,947,100	1,545,385	52.4%	32	5	7	3	11	37	1	25	2	4	2	128	155
전남대	3,556,083	972,636	27.4%	43	17	0	0	5	2	25	5	26	61	100	282	341
전북대	2,549,126	587,528	23.0%	20	16	2	0	0	1	23	0	38	4	13	116	246
제주대	1,176,770	449,604	38.2%	10	1	6	3	10	7	14	14	9	6	0	78	114
중앙대	3,064,500	1,688,540	55.1%	39	0	0	0	26	27	1	30	12	42	12	188	157
충남대	3,048,768	1,031,213	33.8%	71	0	0	5	1	42	2	8	1	13	47	189	314
충북대	1,771,183	594,347	33.6%	19	9	1	0	1	29	17	2	8	32	36	152	179
한국 외대	2,698,390	1,000,643	37.1%	19	0	0	1	0	32	0	10	66	0	0	128	145
한양대	6,019,572	3,342,784	55.5%	83	0	0	42	0	44	0	120	0	0	0	288	300
국공립	28,309,786	9,017,472	31.9%	379	80	21	20	28	184	250	61	105	205	293	1,626	2,641
사립	67,028,177	26,828,723	40.0%	574	28	18	127	156	424	187	491	410	149	60	2,624	3,380
합계	95,337,963	35,846,195	37.6%	953	108	39	147	184	608	437	552	515	354	353	4,250	6,021

별첨 6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현황 (인원, 금액별) (2009~2013년도)

(단위: 명, %)

학교명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강원대	100	100	87.5	87.5	90	90	90	90	75	74	88.5	88.3
건국대	100	97.5	100	91.5	100	77	100	81.3	100	73.3	100	84.12
경북대	100	100	100	98.1	100	91.9	94.7	86.7	94.7	99.1	97.88	95.16
경희대	62.5	62.5	75	61.8	91.7	80.9	84.6	66.2	100	85.5	82.76	71.38
고려대	63.3	49.6	56.4	48.4	79.4	64	85	78.8	80.1	75	72.84	63.16
동아대	100	81.3	100	100	75.5	75.4	100	100	95.9	88.4	94.28	89.02
부산대	92.9	92.9	100	76.6	89.8	74.9	81.8	78.4	92	76	91.3	79.76
서강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울대	70	51.3	76.3	60.5	91.1	82.1	92.9	91.1	100	97	86.06	76.4
서울시립대	100	100	100	100	100	99	100	100	100	100	100	99.8
성균관대	100	87.5	100	92.5	97.1	79.8	100	84.9	97	81	98.82	85.14
아주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연세대	100	100	100	92	97.1	94.4	100	98.1	94	99	98.22	96.7
영남대	100	100	100	100	95.8	89.6	86.7	77.3	100	91	96.5	91.58
원광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화여대	100	100	100	100	100	99	100	100	100	96.5	100	99.1
인하대	83	61	100	88	89	77	100	71	94.4	81.5	93.28	75.7
전남대	100	91.2	96.9	90.7	87	80.9	75.8	75.6	85	89.7	88.94	85.62
전북대	100	100	89	89	93.3	93.3	94	94	100	100	95.26	95.26
제주대	87.5	87.5	75	75	92.9	92.9	83.3	83.3	83	80	84.34	83.74
중앙대	100	100	100	100	95.8	95.8	100	96.5	82.6	81.6	95.68	94.78
충남대	100	100	90	90	93.8	87.5	100	100	100	100	96.76	95.5
충북대	100	100	81.3	73.6	79.2	65.6	75.0	60.8	75	75	82.1	75
한국외대	100	87.5	100	80.4	100	72.2	100	79.2	100	86.1	100	81.08
한양대	100	100	87.5	87.5	100	100	100	100	100	100	97.5	97.5
총 평균	94.4	90.0	92.6	87.3	93.5	86.5	93.7	87.7	94.0	89.2	93.64	88.14

별첨 7

전문대학원별 연간 1인당 등록금, 장학금 및 실질등록금 비교 (2013년)

(단위: 천원, %)

학교명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강원대	9,760	4,232	43.4	5,528	11,162	2,127	19.1	9,035	-	-	-	-
건국대	15,456	11,443	74.0	4,013	21,818	5,559	25.5	16,259	14,720	4,824	32.8	9,896
경북대	10,142	2,465	24.3	7,677	12,368	2,103	17.0	10,265	-	-	-	-
경희대	19,978	6,628	33.2	13,350	20,372	2,329	11.4	18,043	-	-	-	-
고려대	20,138	7,228	35.9	12,910	16,952	1,349	8.0	15,603	27,980	1,527	5.5	26,453
동아대	18,709	7,243	38.7	11,466	18,710	5,577	29.8	13,133	-	-	-	-
부산대	9,746	3,165	32.5	6,581	12,572	2,353	18.7	10,219	-	-	-	-
서강대	17,298	7,079	40.9	10,219	-	-	-	-	16,898	1,906	11.3	14,993
서울대	13,466	4,610	34.2	8,856	-	-	-	-	28,754	1,001	3.5	27,753
서울시립대	10,040	5,418	54.0	4,622	-	-	-	-	-	-	-	-
성균관대	20,840	6,842	32.8	13,998	11,570	3,872	33.5	7,698	21,923	5,760	26.3	16,163
아주대	19,952	6,745	33.8	13,207	20,376	6,958	34.1	13,418	-	-	-	-
연세대	20,476	6,788	33.2	13,688	12,128	3,610	29.8	8,518	28,641	1,891	6.6	26,750
영남대	18,916	9,331	49.3	9,585	18,916	5,268	27.8	13,648	-	-	-	-
원광대	16,000	7,216	45.1	8,784	-	-	-	-	-	-	-	-
이화여대	18,630	8,440	45.3	10,190	21,836	4,119	18.9	17,717	18,468	4,246	23.0	14,222
인하대	18,702	11,012	58.9	7,690	20,156	4,493	22.3	15,663	-	-	-	-
전남대	10,376	2,618	25.2	7,758	9,904	1,262	12.7	8,642	9,265	3,057	33.0	6,208
전북대	10,312	2,435	23.6	7,877	12,762	1,781	14.0	10,981	-	-	-	-
제주대	10,300	3,663	35.6	6,637	12,838	3,280	25.6	9,558	-	-	-	-
중앙대	17,500	9,988	57.1	7,512	19,700	4,445	22.6	15,255	16,970	2,799	16.5	14,172
충남대	9,650	3,193	33.1	6,457	12,492	1,209	9.7	11,283	-	-	-	-

학교명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충북대	9,824	3,087	31.4	6,737	9,830	1,500	15.3	8,330	-	-	-	-
한국의대	17,600	7,984	45.4	9,616	-	-	-	-	-	-	-	-
한양대	19,224	10,581	55.0	8,643	14,658	2,052	14.0	12,606	15,974	2,152	13.5	13,822
최고	20,840	11,443	74.0	13,998	21,836	6,958	34.1	18,043	28,754	5,760	33.0	27,753
평균	15,321	6,377	40.6	8,944	15,556	3,262	20.5	12,294	19,906	2,916	17.2	16,989
최저	9,650	2,435	23.6	4,013	9,830	1,209	8.0	7,698	9,265	1,001	3.5	6,208

별첨 8

2014년도 법전원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학생 수 현황

(단위: 명)

학교명	학년	소득분위별 지급학생 수(명)													기타	합계
		기초 수급 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6,760 천원 이하	26,040 천원 이하	33,510 천원 이하	39,720 천원 이하	45,650 천원 이하	52,190 천원 이하	59,790 천원 이하	70,7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초과				
강원대	1학년	0	7	2	5	0	0	0	3	0	0	1	1	19		
	2학년	1	4	5	1	1	1	1	2	1	3	1	1	22		
	3학년	0	3	5	3	3	1	2	0	0	0	3	1	21		
	소계	1	14	12	9	4	2	3	5	1	3	5	3	62		
전국대	1학년	1	3	9	2	4	2	2	1	1	3	8	0	36		
	2학년	1	5	3	3	3	0	0	5	0	5	14	0	39		
	3학년	0	2	4	3	5	4	2	3	1	3	14	0	41		
	소계	2	10	16	8	12	6	4	9	2	11	36	0	116		
경북대	1학년	2	6	7	4	6	2	2	2	6	9	7	12	65		
	2학년	3	29	2	2	1	2	3	0	1	5	6	0	54		
	3학년	5	37	5	1	0	0	4	2	2	3	4	0	63		
	소계	10	72	14	7	7	4	9	4	9	17	17	12	182		
경희대	1학년	4	3	1	2	3	2	1	2	1	1	0	15	35		
	2학년	1	3	3	1	3	2	1	0	1	2	0	21	38		
	3학년	1	2	2	0	1	2	2	0	0	5	0	19	34		
	소계	6	8	6	3	7	6	4	2	2	8	0	55	107		
고려대	1학년	4	4	5	0	0	2	3	4	11	8	21	14	76		
	2학년	4	4	7	11	2	4	0	5	10	2	9	25	83		
	3학년	5	4	4	1	1	5	6	2	5	5	10	38	86		
	소계	13	12	16	12	3	11	9	11	26	15	40	77	245		
동아대	1학년	3	12	6	5	3	5	3	5	6	10	21	1	80		
	2학년	3	6	4	6	3	4	3	4	7	9	17	14	80		
	3학년	5	2	9	4	3	2	2	5	5	3	18	16	74		
	소계	11	20	19	15	9	11	8	14	18	22	56	31	234		

학교명	학년	소득분위별 지급학생 수(명)												기타	합계
		기초 수급 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6,760 천원 이하	26,040 천원 이하	33,510 천원 이하	39,720 천원 이하	45,650 천원 이하	52,190 천원 이하	59,790 천원 이하	70,7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초과				
부산대	1학년	3	6	4	4	6	1	4	0	6	9	1	1	45	
	2학년	2	4	7	5	5	6	5	1	5	2	0	1	43	
	3학년	2	7	5	3	6	3	1	2	1	1	0	2	33	
	소계	7	17	16	12	17	10	10	3	12	12	1	4	121	
서강대	1학년	3	1	2	1	1	0	0	0	0	1	0	4	13	
	2학년	4	4	3	0	2	0	0	0	1	0	0	7	21	
	3학년	2	1	0	2	0	3	0	0	0	0	1	6	15	
	소계	9	6	5	3	3	3	0	0	1	1	1	17	49	
서울대	1학년	1	7	10	7	6	5	3	5	2	0	0	5	51	
	2학년	0	16	7	5	4	6	6	7	9	5	0	7	72	
	3학년	0	7	7	7	2	8	9	7	1	5	2	3	58	
	소계	1	30	24	19	12	19	18	19	12	10	2	15	181	
서울 시립대	1학년	1	3	1	0	0	0	0	0	0	0	0	45	50	
	2학년	2	3	3	3	1	0	1	0	4	0	1	11	29	
	3학년	2	2	2	4	1	0	1	1	1	3	5	11	33	
	소계	5	8	6	7	2	0	2	1	5	3	6	67	112	
성균관대	1학년	0	7	7	4	4	5	1	1	5	7	13	34	88	
	2학년	2	8	6	3	4	5	1	0	8	6	11	43	97	
	3학년	1	10	6	7	2	3	1	4	6	5	2	45	92	
	소계	3	25	19	14	10	13	3	5	19	18	26	122	277	
이주대	1학년	1	8	3	3	1	2	1	0	4	2	3	0	28	
	2학년	2	8	3	1	1	2	0	0	4	8	0	0	29	
	3학년	0	12	3	3	0	0	4	4	4	6	0	0	36	
	소계	3	28	9	7	2	4	5	4	12	16	3	0	93	

학교명	학년	소득분위별 지급학생 수(명)												기타	합계
		기초 수급 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6,760 천원 이하	26,040 천원 이하	33,510 천원 이하	39,720 천원 이하	45,650 천원 이하	52,190 천원 이하	59,790 천원 이하	70,7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초과				
연세대	1학년	7	13	3	0	2	2	1	1	0	0	0	7	36	
	2학년	4	11	4	3	3	1	2	1	6	5	4	17	61	
	3학년	4	15	5	2	5	3	0	3	3	3	4	12	59	
	소계	15	39	12	5	10	6	3	5	9	8	8	36	156	
영남대	1학년	4	29	2	1	1	2	0	1	2	0	3	14	59	
	2학년	6	28	4	0	6	1	0	3	2	0	8	7	65	
	3학년	1	35	6	5	3	0	3	0	1	0	4	6	64	
	소계	11	92	12	6	10	3	3	4	5	0	15	27	188	
원광대	1학년	0	14	4	4	2	6	1	2	0	1	0	5	39	
	2학년	2	26	3	4	1	3	3	0	0	3	0	15	60	
	3학년	0	18	0	5	0	1	2	0	0	0	4	15	45	
	소계	2	58	7	13	3	10	6	2	0	4	4	35	144	
이화여대	1학년	2	3	3	2	4	2	2	2	5	8	11	27	71	
	2학년	1	9	4	4	4	4	4	3	7	4	18	11	73	
	3학년	0	7	4	6	4	2	2	1	3	5	16	22	72	
	소계	3	19	11	12	12	8	8	6	15	17	45	60	216	
인하대	1학년	1	16	3	1	2	1	1	6	1	2	3	5	42	
	2학년	1	13	5	2	5	5	2	0	0	1	1	5	40	
	3학년	0	9	9	4	1	2	3	0	1	1	2	10	42	
	소계	2	38	17	7	8	8	6	6	2	4	6	20	124	
전남대	1학년	26	17	0	0	0	0	0	0	0	0	0	0	43	
	2학년	24	16	0	0	0	0	0	0	0	0	0	0	40	
	3학년	24	8	0	0	0	0	0	0	0	0	0	0	32	
	소계	74	41	0	0	0	0	0	0	0	0	0	0	115	

학교명	학년	소득분위별 지급학생 수(명)												기타	합계
		기초 수급 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6,760 천원 이하	26,040 천원 이하	33,510 천원 이하	39,720 천원 이하	45,650 천원 이하	52,190 천원 이하	59,790 천원 이하	70,7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초과			
전북대	1학년	6	6	0	1	0	2	0	1	2	0	0	0	18	
	2학년	6	10	0	1	0	1	0	1	0	0	1	1	21	
	3학년	8	7	1	0	0	1	0	0	0	0	0	0	17	
	소계	20	23	1	2	0	4	0	2	2	0	1	1	56	
제주대	1학년	3	4	1	3	1	1	0	1	3	0	2	3	22	
	2학년	0	3	2	3	0	4	1	1	1	2	1	11	29	
	3학년	0	5	3	0	1	2	0	2	0	0	4	6	23	
	소계	3	12	6	6	2	7	1	4	4	2	7	20	74	
중앙대	1학년	5	0	1	2	1	1	2	2	0	1	4	14	33	
	2학년	4	0	3	0	4	0	3	4	6	0	4	8	36	
	3학년	7	2	2	0	0	3	0	2	4	7	5	12	44	
	소계	16	2	6	2	5	4	5	8	10	8	13	34	113	
충남대	1학년	7	10	3	4	5	2	2	6	1	1	0	13	54	
	2학년	8	16	5	7	2	3	0	2	1	1	0	8	53	
	3학년	7	16	7	3	7	1	1	2	1	2	0	8	55	
	소계	22	42	15	14	14	6	3	10	3	4	0	29	162	
충북대	1학년	0	0	1	1	0	1	1	3	1	2	12	28	50	
	2학년	0	1	0	2	0	4	0	0	1	3	5	17	33	
	3학년	0	2	1	1	2	1	1	0	1	2	11	14	36	
	소계	0	3	2	4	2	6	2	3	3	7	28	59	119	
한국외대	1학년	3	4	6	4	2	1	1	3	3	5	10	0	42	
	2학년	2	3	2	4	4	3	3	1	2	4	7	0	35	
	3학년	3	4	0	2	5	2	1	1	4	8	11	6	47	
	소계	8	11	8	10	11	6	5	5	9	17	28	6	124	

학교명	학년	소득분위별 지급학생 수(명)												기타	합계
		기초 수급 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6,760 천원 이하	26,040 천원 이하	33,510 천원 이하	39,720 천원 이하	45,650 천원 이하	52,190 천원 이하	59,790 천원 이하	70,7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초과				
한양대	1학년	6	10	4	1	3	4	2	4	12	15	42	0	103	
	2학년	5	10	13	8	4	3	4	4	10	11	25	0	97	
	3학년	4	11	5	2	10	2	4	7	7	14	26	0	92	
	소계	15	31	22	11	17	9	10	15	29	40	93	0	292	
총합계	1학년	93	193	88	61	57	51	33	55	72	85	162	248	1,198	
	2학년	88	240	98	79	63	64	43	44	87	81	133	230	1,250	
	3학년	81	228	95	68	62	51	51	48	51	81	146	252	1,214	
	합계	262	661	281	208	182	166	127	147	210	247	441	730	3,662	
분석자료	누적 인원	262	923	1,204	1,412	1,594	1,760	1,887	2,034	2,244	2,491	2,932	3,662	-	
	누적 비율 (3,662명)	7.2%	25.2%	32.9%	38.6%	43.5%	48.1%	51.5%	55.5%	61.3%	68.0%	80.1%	100%	-	
	누적 비율 (6,021명)	4.4%	15.3%	20.0%	23.5%	26.5%	29.2%	31.3%	33.8%	37.3%	41.4%	48.7%	60.8%	-	

별첨 9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반영비율 (2단계)

반영비율	학교명
10% 이상 ~ 20% 미만	건국대(15%), 경북대(14%), 경희대(17%), 고려대(14%), 동아대(가군,10%), 서강대(17%), 아주대(15%), 연세대(15%), 이화여대(15%), 전남대(10%), 제주대(16%), 충북대(14%)
20% 이상 ~ 30% 미만	강원대(22%), 동아대(나군, 20%), 부산대(20%), 서울시립대(20%), 성균관대(20%), 영남대(20%), 인하대(20%), 전북대(20%), 중앙대(20%), 충남대(25%), 한국외대(20%), 한양대(20%)
30% 이상	서울대(40%), 원광대(30%)
기타	고려대(우선선발, P/F), 서울대(우선선발, P/F), 성균관대(우선선발, 면접없음), 연세대(우선선발, P/F), 이화여대(우선선발, P/F)

별첨 10
학교별 면접 반영 비율

구분	2단계 전형 - 반영점수/만점
강원대	100점/450점
건국대	150점/1,000점
경북대	70점/500점
경희대	100점/600점
고려대	100점/700점, 우선선발 P/F
동아대	가군 100점/1,000점, 나군200점/1,00점
부산대	20점/100점
서강대	20점/120점
서울대	200점/500점(면접 및 구술), 우선선발 P/F
서울시립대	20점/100점
성균관대	20점/100점, 우선선발(별도 전형없음)
아주대	15점/100점
연세대	15점/100점, 우선선발 P/F
영남대	200점/1,000점
원광대	30점/100점
이화여대	150점/1,000점, 우선선발 P/F
인하대	200점/1,000점
전남대	50점/500점
전북대	20점/100점
제주대	서류40%, 논술20%, 면접40%를 40점 만점으로 환산
중앙대	100점/500점
충남대	100점/400점
충북대	70점/500점
한국외대	100점/500점
한양대	200점/1,000점

대학명	전형방법 및 내용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강원대 [환경법]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가/부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300점]	○ 1단계 성적 : 30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45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가능)	각 군별 ○ 비법학사 : 10명 이상 ○ 타 대학 : 12명 이상 ○ 지역인재 : 2명 이상
건국대 [부동산법]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50점 ○ 어학성적 : 200점 [합계 : 650점]	○ 1단계 성적 : 65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50점 ○ 서류심사 : 100점 ○ 기타 [합계 : 1,0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비법학사 : 1/3(13명)이상 ○ 타 대학 : 1/2(20명)이상
경북대 [IT]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면접 : 5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30점 ○ 구술면접 : 7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경희대 [글로벌 기업법무]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5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500점]	○ 1단계 성적 : 5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6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비법학사 : 21명 이상 ○ 타 대학 : 21명 이상
고려대 [GLP]	○ LEET성적 : 200점 ○ 학부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자기소개서 : 100점 ○ 논술성적 : P/F [합계 : 600점]	『우선선발』 ○ 1단계 성적 : 600점 ○ 구술면접: 적격/부적격 [합계 : 600점]	『우선선발』 일반전형 모 집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선발	당락 여부만을 결정하는 구술 면접 실시 후 성적순으로 선발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일반선발』 ○ 1단계 성적 : 600점 ○ 구술면접 : 100점 [합계 : 700점]	『일반선발』 우선선발 제 외, 선발인원 의 3배 이내 에서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대학명	전형방법 및 내용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동아대 [국제 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200점 ○ 서류심사 : (‘가’군 : 300점, ‘나’군 : 200점) ○ 서류심사에 LEET논술 ○ 반영 [합계 : ‘가’군 900점, ‘나’군 8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성적 : (‘가’군 : 900점, ‘나’군 : 800점) ○ 면접성적 : (‘가’군 : 100점, ‘나’군 : 2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300~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법학사 : 28명 이상 ○ 타 대학 : 28명 이상 ○ 지역인재 : 16명 이상
부산대 [금융·해운 통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ET성적 : 20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합계 : 4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성적 : (‘가’군 : 40점, ‘나’군 : 50점 점으로 환산) ○ 논술성적 : 20점 (‘가’군만) ○ 자기소개서 : (‘가’군 : 20점, ‘나’군 : 3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20% 이상
서강대 [기업법 (금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30점 ○ 어학성적 : 20점 ○ 자기소개서 및 기타 서류성적 : 20점 [합계 :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2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법학사 : 14명 이상 ○ 타 대학 : 20명 이상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학성적 : 지원자격 여부심사> ○ LEET성적 : 80점 ○ 대학성적 : 100점 ○ 정성평가 : 120점 [합계 : 300점]	『우선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적격/부적격 [합계 : 300점]	『우선선발』 일반전형 모집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선발	당락여부만을 결정하는 면접 및 구술 고사 실시 후 성적순 으로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심층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200점 [합계 : 500점]	『심층선발』 우선선발 제 외한 인원의 3배수 이내에 서 선발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 을 합산하여 성적순 으로 우선선발 인원 제외하여 선발	

대학명	전형방법 및 내용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서울 시립대 [조세법]	○ LEET성적 : 20점 ○ 대학성적 : 15점 ○ 어학성적 : 15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20점 ○ 논술성적 : 1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400% 선발 (특별전형 6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성균관대 [기업법무]	<어학성적 : 지원자격으로 인정> ○ LEET성적 : 15점 ○ LEET논술 : 10점 ○ 대학성적 : 15점 ○ 서류심사 : 40점 [합계 : 80점]	『우선선발』 ○ 별도의 전형 없음	『우선선발』 ○ 총점순위 ○ 일반전형 - 50명 내외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비법학사 : 41명 이상 ○ 타 대학 : 41명 이상
		『일반선발』 ○ 1단계 성적 - 80점 ○ 심층면접 - 20점 [합계 : 100점]	『일반선발』 ○ 일반전형 - 192명 내외 ○ 특별전형 - 18명 내외		
아주대 [중소기업 법무]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서면평가(논술포함) : 15점 ○ 대면평가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7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연세대 [공공거버 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의료과학 기술]	『일반전형』 ○ LEET성적 : 2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 서류평가 : 25점 [합계 : 85점]	『일반전형 우선선발』 ○ 1단계 합계점수 : 85점 ○ 2단계 구술면접 : P/F [합계 : 85점]	『우선선발』 총점 순위에 따라 50명 이 내 선발	『우선선발』 구술면접심사(P/F) 후 최종합격 여부 결정	○ LEET 논술은 서류평 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 ○ TOEFL은 IBT만 인정 하며 외국에서 응시 한 TOEIC은 인정하 지 않음.
		『일반전형 일반선발』 ○ 1단계 합계점수 : 85점 ○ 2단계 구술면접 : 15점 [합계 : 100점]	『일반선발』 총점 순위에 따라 우선선 발 제외한 인 원의 300% 내 의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특별전형』 ○ LEET성적 : 2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평가 : 25점 [합계 : 65점]	『특별전형』 ○ 1단계 합계점수 : 65점 ○ 2단계 구술면접 : 15점 [합계 : 80점]		

대학명	전형방법 및 내용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영남대 [공익 인권법]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면평가 : 200점 [합계 : 700점]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0점 ○ 기타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각 군별 ○ 비법학사 : 34% 이상 ○ 타 대학 : 70% 이상
원광대 [의생명 분야]	○ LEET성적 : 35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5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면접성적 : 3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가능)	○ 비법학사 : 22명 이상 ○ 타 대학 : 29명 이상 ○ 지역인재 : 12명 이내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Gender법]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5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00점]	『우선선발』 ○ 일반전형에서 30명 이내 (1단계 전형의 고득 점자 순) ○ 구술면접 : P/F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150점 ○ 심층면접 : 15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4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비법학사 : 34명 이상 ○ 타 대학 : 34명 이상
인하대 [지적재산 권,물류법]	○ LEET성적 : 200점 ○ 대학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5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50점]	○ 1단계 성적 : 75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200점 ○ 기타 [합계 : 1,000점]	정원의 4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각 군별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전남대 [공익 인권법]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1/5 이상
전북대 [동북아법]	○ LEET성적 : 30점 ○ 학부성적 : 15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10점 [합계 : 65점]	○ 1단계 성적 : 65점 ○ 논술성적 : 15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1/5 이상

대학명	전형방법 및 내용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제주대 [국제법무]	○ LEET성적 : 25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5점 [합계 : 60점]	○ 1단계 성적 : 60점 ○ 면접성적 : 40점 - 서류심사 : 40% - LEET논술 : 20% - 구술고사 : 40% [합계 : 1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가능)	○ 비법학사 : 35% 이상 ○ 타 대학 : 35% 이상 ○ 지역인재 : 10% 이상
중앙대 [문화법]	○ LEET성적 : 10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심층면접 : 100점 ○ 기타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60% 이상
충남대 [지적 재산권]	○ LEET성적 : 120점 ○ 대학성적 : 5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30점 [합계 : 300점]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성적 : 100점 ○ 논술성적: 면접 시 반영 [합계 : 400점]	정원의 35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가능)	각 군별 ○ 비법학사 : 21명 이상 ○ 타 대학 : 30명 이상 ○ 지역인재 : 10명 이상
충북대 [과학기술]	○ LEET성적 : 100점 - 언어이해 : 50점 - 추리논증 : 5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합계 : 300점]	○ 1단계 성적 : 300점 ○ 논술점수 : 100점 ○ 서류평가 : 30점 ○ 개별면접 : 7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가능)	○ 비법학사 : 25명이상 ○ 타 대학 : 25명이상
한국외대 [국제지역]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한양대 [국제소송, 지식·문화 산업, 공익·소수 자인권]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220점 ○ 어학성적 : 110점 ○ 서류심사 : 220점 [합계 : 700점]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3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 가능)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별첨 12

법전원 입학생 및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별 현황 비교

□ 2009년

(단위: 명, %)

구분	법전원 입학생				사법시험 합격자			
	남	여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25	73	98	4.9	16	7	23	2.3
23 ~ 25세	236	320	556	27.8	128	128	256	25.7
26 ~ 28세	412	255	667	33.4	187	129	316	31.7
29 ~ 31세	284	91	375	18.8	135	58	193	19.4
32 ~ 34세	165	34	199	10.0	94	16	110	11.0
35 ~ 40세 (사시 : 35 ~ 39세)	76	11	87	4.4	66	16	82	8.2
41세 이상 (사시 : 40세 이상)	12	4	16	0.8	16	1	17	1.7
계	1,210	788	1,998	100.0	642	355	997	100.0

□ 2010년

(단위: 명, %)

구분	법전원 입학생				사법시험 합격자			
	남	여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15	9	24	1.2	22	14	36	4.4
23 ~ 25세	149	300	449	22.5	135	138	273	33.5
26 ~ 28세	361	357	718	35.9	132	114	246	30.2
29 ~ 31세	282	145	427	21.4	90	50	140	17.2
32 ~ 34세	165	52	217	10.9	52	16	68	8.4
35 ~ 40세 (사시 : 35 ~ 39세)	119	27	146	7.3	38	6	44	5.4
41세 이상 (사시 : 40세 이상)	16	3	19	1.0	7	0	7	0.9
계	1,107	893	2,000	100.0	476	338	814	100.0

□ 2011년

(단위: 명,%)

구분	법전원 입학생				사법시험 합격자			
	남	여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35	49	84	4.0	17	7	24	3.4
23 ~ 25세	171	328	499	23.9	103	92	195	27.6
26 ~ 28세	442	279	721	34.5	102	85	187	26.4
29 ~ 31세	310	138	448	21.4	105	53	158	22.3
32 ~ 34세	151	44	195	9.3	60	20	80	11.3
35 ~ 40세 (사시 : 35 ~ 39세)	120	17	137	6.5	45	7	52	7.4
41세 이상 (사시 : 40세 이상)	8	0	8	0.4	11	0	11	1.6
계	1,237	855	2,092	100.0	443	264	707	100.0

□ 2012년

(단위: 명, %)

구분	법전원 입학생				사법시험 합격자			
	남	여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21	21	42	2.0	6	7	13	2.6
23 ~ 25세	218	406	624	29.8	72	91	163	32.2
26 ~ 28세	426	270	696	33.3	99	64	163	32.2
29 ~ 31세	252	137	389	18.6	49	33	82	16.2
32 ~ 34세	134	51	185	8.8	39	9	48	9.5
35 ~ 40세 (사시 : 35 ~ 39세)	111	23	134	6.4	25	7	32	6.3
41세 이상 (사시 : 40세 이상)	20	2	22	1.1	5	0	5	1.0
계	1,182	910	2,092	100	295	211	506	100.0

□ 2013년

(단위: 명, %)

구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사법시험 합격자			
	남	여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25	29	54	2.6	4	1	5	1.6
23 ~ 25세	267	417	684	32.6	36	46	82	26.8
26 ~ 28세	395	255	650	31.0	54	40	94	30.7
29 ~ 31세	237	99	336	16.0	32	20	52	17.0
32 ~ 34세	154	49	203	9.7	32	14	46	15.0
35 ~ 40세 (사시 : 35 ~ 39세)	110	29	139	6.6	20	1	21	6.9
41세 이상 (사시 : 40세 이상)	30	3	33	1.6	5	1	6	2.0
계	1,218	881	2,099	100.0	183	123	306	100.0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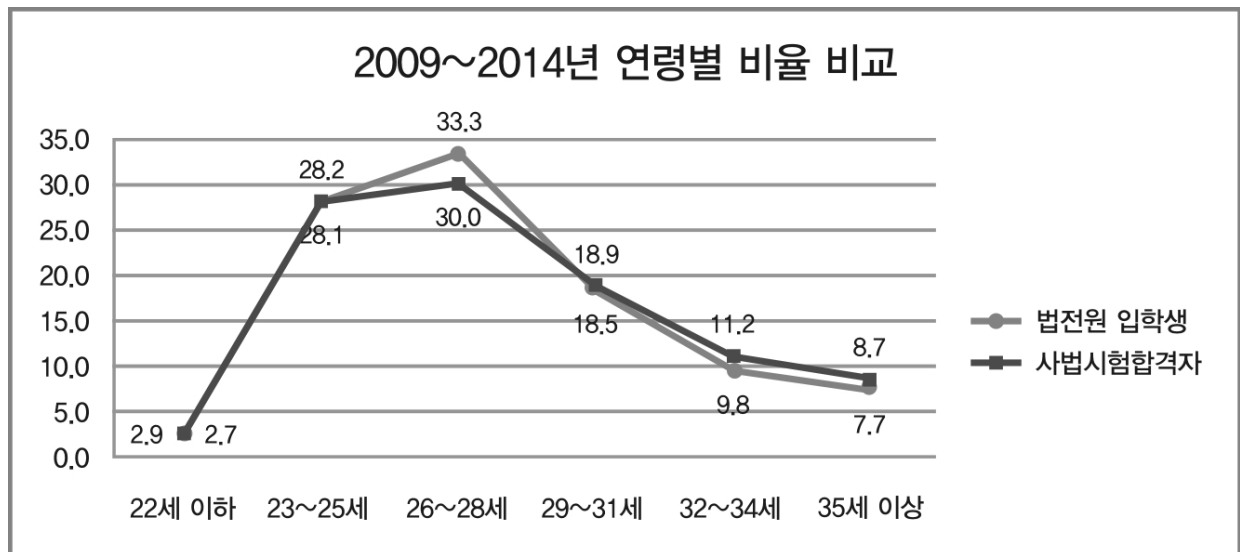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법전원 입학생				사법시험 합격자			
	남	여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12	21	33	1.6	0	1	1	0.5
23 ~ 25세	224	430	654	31.6	17	12	29	14.2
26 ~ 28세	406	250	656	31.7	33	21	54	26.5
29 ~ 31세	191	116	307	14.8	22	21	43	21.1
32 ~ 34세	153	53	206	9.9	36	9	45	22.1
35 ~ 40세 (사시 : 35 ~ 39세)	142	30	172	8.3	23	4	27	13.2
41세 이상 (사시 : 40세 이상)	38	6	44	2.1	5	0	5	2.5
계	1,166	906	2,072	100.0	136	68	204	100.0

□ 2009~2014년 종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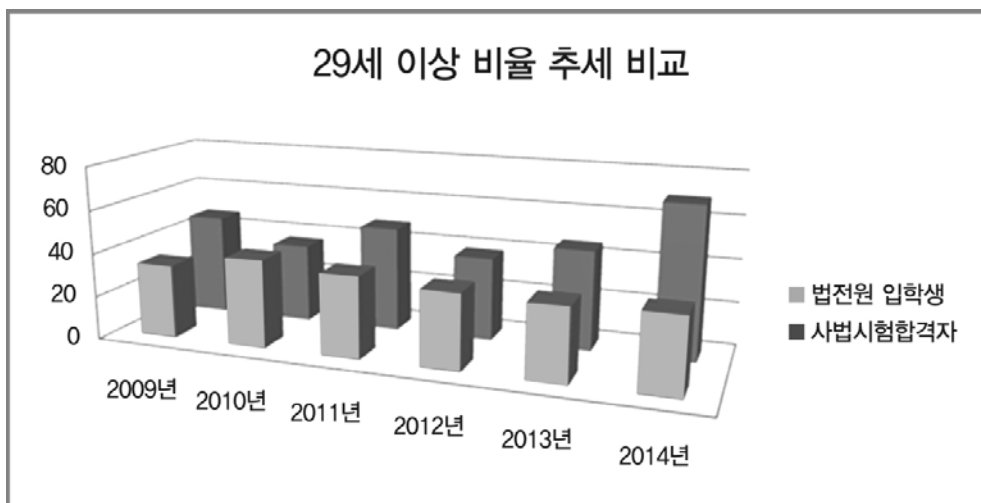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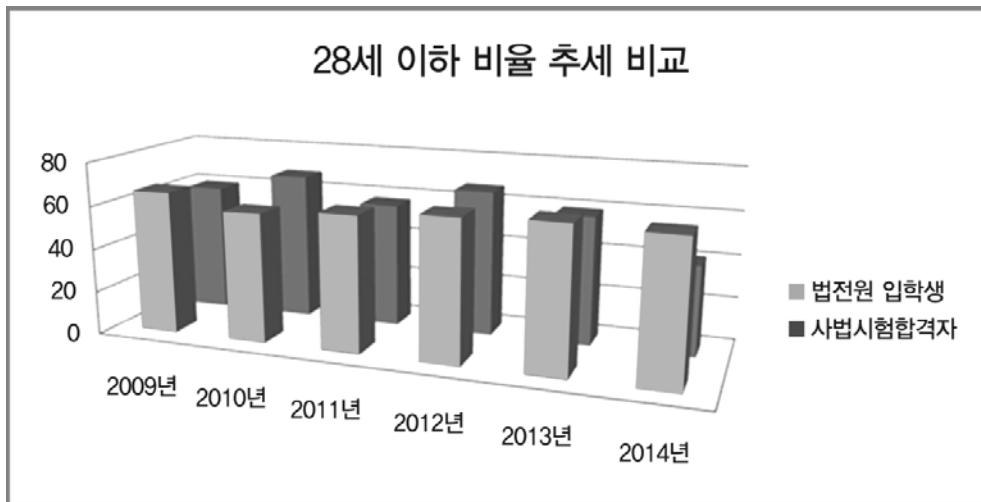
구분	법전원 입학생				사법시험 합격자			
	남	여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133	202	335	2.7	65	37	102	2.9
23 ~ 25세	1,265	2,201	3,466	28.1	491	507	998	28.2
26 ~ 28세	2,442	1,666	4,108	33.3	607	453	1,060	30.0
29 ~ 31세	1,556	726	2,282	18.5	433	235	668	18.9
32 ~ 34세	922	283	1,205	9.8	313	84	397	11.2
35세 이상	802	155	957	7.7	266	43	309	8.7
계	7,120	5,233	12,353	100.0	2,175	1,359	3,534	100.0



□ 28세 이하 및 29세 이상 추세

(단위: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8세 이하	법전원 입학생	66.1	59.6	62.4	65.1	66.2	64.9
	사법시험 합격자	59.7	68.1	57.4	67	59.1	41.2
29세 이상	법전원 입학생	34	40.6	37.6	34.9	33.9	35.1
	사법시험 합격자	46.8	36.4	48.4	38.3	45.8	69.6



(단위: 명, %)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수료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재학생	학사 경고		재학생	학사 경고		유급	유급	재학생	학사 경고		재학생	학사 경고		유급	유급	재학생	학사 경고		재학생	학사 경고		유급	유급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강원대	40	3	7.50	40	1	2.50	1	2.50	39	1	2.56	39	0	0.00	0	0.00	42	1	2.38	42	0	0.00	1	2.38	1	2.38
건국대	38	1	2.63	39	3	7.69	1	2.56	46	3	6.52	44	0	0.00	0	0.00	42	0	0.00	38	0	0.00	0	0.00	0	0.00
경북대	124	10	8.06	120	2	1.67	3	2.50	123	5	4.07	122	2	1.64	1	0.82	121	6	4.96	121	0	0.00	0	0.00	0	0.00
경희대	66	3	4.55	67	2	2.99	2	2.99	66	0	0.00	63	1	1.59	0	0.00	59	0	0.00	61	0	0.00	0	0.00	2	3.28
고려대	134	17	12.69	120	5	4.17	7	5.83	122	1	0.82	122	3	2.46	0	0.00	117	2	1.71	118	1	0.85	1	0.85	6	5.08
동아대	80	5	6.25	81	6	7.41	2	2.47	78	4	5.13	82	0	0.00	0	0.00	81	1	1.23	75	0	0.00	0	0.00	0	0.00
부산대	128	2	1.56	124	0	0.00	0	0.00	121	8	6.61	121	2	1.65	2	1.65	107	9	8.41	111	3	2.70	2	1.80	4	3.60
서강대	43	2	4.65	40	2	5.00	0	0.00	43	2	4.65	42	2	4.76	0	0.00	37	0	0.00	39	0	0.00	0	0.00	1	2.56
서울대	162	5	3.09	159	13	8.18	5	3.14	157	0	0.00	156	6	3.85	1	0.64	139	0	0.00	136	5	3.68	0	0.00	0	0.00
서울 시립대	52	1	1.92	49	1	2.04	0	0.00	49	1	2.04	50	2	4.00	1	2.00	49	1	2.04	53	0	0.00	0	0.00	2	3.77
성균관대	129	12	9.30	126	9	7.14	5	3.97	123	3	2.44	121	1	0.83	0	0.00	125	1	0.80	122	0	0.00	0	0.00	7	5.74
아주대	48	5	10.42	48	2	4.17	1	2.08	51	2	3.92	48	0	0.00	0	0.00	56	0	0.00	61	4	6.56	0	0.00	0	0.00
연세대	126	6	4.76	126	10	7.94	12	9.52	126	0	0.00	125	0	0.00	0	0.00	111	0	0.00	116	0	0.00	0	0.00	0	0.00
영남대	71	4	5.63	69	0	0.00	0	0.00	71	0	0.00	71	0	0.00	0	0.00	68	1	1.47	68	0	0.00	0	0.00	6	8.82
원광대	60	2	3.33	55	3	5.45	3	5.45	69	1	1.45	68	0	0.00	0	0.00	56	3	5.36	54	0	0.00	0	0.00	0	0.00
이화여대	110	8	7.27	101	0	0.00	1	0.99	103	0	0.00	105	0	0.00	0	0.00	104	0	0.00	103	1	0.97	0	0.00	2	1.94
인하대	55	3	5.45	52	0	0.00	0	0.00	52	1	1.92	52	0	0.00	1	1.92	48	0	0.00	49	1	2.04	0	0.00	0	0.00
전남대	136	4	2.94	130	2	1.54	2	1.54	127	1	0.79	125	1	0.80	1	0.80	116	5	4.31	114	0	0.00	2	1.75	10	8.77
전북대	86	0	0.00	86	0	0.00	0	0.00	80	2	2.50	80	1	1.25	0	0.00	84	3	3.57	83	0	0.00	0	0.00	4	4.82
제주대	39	1	2.56	39	0	0.00	0	0.00	40	0	0.00	39	0	0.00	0	0.00	35	1	2.86	33	4	12.1	2	6.06	8	24.24
중앙대	55	1	1.82	54	0	0.00	1	1.85	49	1	2.04	50	0	0.00	0	0.00	55	0	0.00	55	3	5.45	0	0.00	3	5.45
충남대	111	12	10.81	105	4	3.8	1	0.95	101	1	0.99	99	1	1.01	1	1.01	105	4	3.81	105	0	0.00	0	0.00	4	3.81
충북대	79	4	5.06	73	0	0.00	1	1.37	71	1	1.41	72	1	1.39	0	0.00	71	3	4.23	72	5	6.94	1	1.39	0	0.00
한국외대	54	5	9.26	50	1	2.00	0	0.00	44	3	6.82	47	0	0.00	0	0.00	51	5	9.80	51	3	5.88	0	0.00	6	11.76
한양대	110	5	4.55	109	5	4.59	3	2.75	102	0	0.00	104	1	0.96	1	0.96	99	0	0.00	98	0	0.00	1	1.02	6	6.12
인원 계	2,136	121	5.66	2,062	71	3.44	51	2.47	2,053	41	2.00	2,047	24	1.17	9	0.44	1,978	46	2.33	1,978	30	1.52	10	0.51	72	3.64

第282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8 號

國會事務處

2009年 4月 29日(水) 午後 2時

15. 변호사시험법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4시35분)

○ **의장 김형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변호사시험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주영**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을위한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 여야 의원 7명으로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안-정부안이 되겠습니다-박선영 의원안 또 강용석 의원안을 다시 종합 심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오늘 설명 드리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성안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전 국회의원님들께 서신을 보내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도록 요청했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변호사시험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고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 전형과 장학금 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서 배려하기로 하는 한편, 예비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파행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 또 고시 낭인의 양산 우려, 가난한 사람의 등용문으로 예비시험제를 두자는 취지와는 달리 로스쿨 3년 장기 교육을 피해서 단기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부자들이 사교육을 통해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질 우려가 큰 점 등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시험 제도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서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효과의 지속성, 인적 자원의 사회적 배분 등을 고려해서 5년 내에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자에게 양쪽 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지 않고 병행하는 사법시험 응시를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병행하는 기간 동안의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현행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일부 단계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시험의 나머지 단계에 응시하는 것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의 응시제한 횟수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출제된 문제를 동일한 시간에 실시하여 시험준비 부담을 다소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논술형에는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 취지를 살리고 시험 부담 등을 고려해서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 과목은 인접한 복수의 법률 분야를 통합한 시험 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을 고려해서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과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 드리는 것은 올해 3월부터 개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한 충실한 법조인력 양성교육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호사시험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 존 함)

○ **의장 김형오** 이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용석 의원 등 7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용석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출신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변호사시험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 안으로 올라온 법안을 보면 지난 2월에 부결되었던 안과, 변호사 시험에 응시 횟수를 5년에 세 번에서 5년에 다섯 번으로 고쳐 놓은 것 말고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국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조삼모사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지난 2월에 법안이 부결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학비가 연간 2000만 원이 드는 로스쿨을 3년간 다녀서 졸업한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일흔 여덟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수정안은 다른 모든 내용은 법사위안과 동일합니다. 오직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8년부터 단 10%만 로스쿨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예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한 로스쿨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그것도 겨우 10% 때문에 로스쿨이 흔들린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

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교육 대신에 검정고시, 대학 교육 대신에 학사시험이 있지만 누구도 검정고시나 학사시험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이 흔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해 놓고 왜 예비시험을 인정하느냐?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은 2011년에 우리와 같이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에 예비시험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고 10% 같은 식으로 예비시험 비율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큰 주를 포함한 31개 주에서는 꼭 로스쿨 3년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19개 중소 주에서만 로스쿨 3년 졸업을 변호사 시험의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 꼭 예비시험이냐? 로스쿨에서 장학금 주면 가난한 천재들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가난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 만큼 키워졌으니 돈 벌어 왔으면 하는 집안 눈치 봐야 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학비 비싼 사립대는 엄두를 못 내고 학비 없는 과기대나 육사, 경찰대를 가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등록금 좀 내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법사위안에서는 로스쿨의 장학금 확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허한 약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큼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사위안은 판검사, 변호사라는 직업에 로스쿨이라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길을 내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로스쿨과 부유층을 위한 '성 쌓기 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 모두를 위한 '길 내기 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수정안에 찬성해 주셔서 국민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 존함)

○ **의장 김형오** 강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로스쿨은 지난해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자마자 각종 소송에 휘말려 왔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온갖 논란과 토론을 거쳐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자마자 수많은 소송에 휘말린 까닭은 바로 국민의 여망을 도외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난 2월 12일 본회의에서 아주 의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서서 강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과 소외계층의 배려 등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사필귀정이고 이런 국회의 부결은 국민 정서를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사위원회에서 또다시 원안과 다를 것도 없는 그리고 부대의견이라고 하는 법적 효력도 전혀 없는 것을 마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다시 의결을 한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부결시킨 국회의원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가 도입을 했던 로스쿨제도는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변호사 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OECD의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법률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미 오래 전의 말이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보다 더 심한 부의 고착화와 그리고 법관직의

세습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1인당 소송사건의 수가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10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서 우리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장학금제도를 확충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가 때에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대학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인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제도를 이런 수준으로 하겠습니까라고 해서 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다시 장학금제도를 확충하라고 한다고 그 확충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장학금제도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는 그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대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학들의 재정상태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장학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 스스로 법과대학 교수이고 우리 집도 법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의 문제 그리고 변호사 사회, 우리 법관사회의 문제점을 너무나 몸 전체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지금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대단히 성업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림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강남입니다. 강남에 있는 로스쿨전문학원의 평균 수강료가 과목당 50만 원 안팎입니다. 논술·영어 20만 원 안팎이고 6개월짜리 종합반 과정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스쿨 입학 준비를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 그리고 로스쿨 등록금만으로 6000만 원, 졸업 직후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 시험 준비를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서 변호사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 1억에서 2억 원이 들어간다면 여기 앉아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녀분을 얼마나 로스쿨에 입학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생계에 위협을 받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은 전혀 로스쿨에 들어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직이 세습화되고 그리고 부가 세습화되고 귀족화되는 이 길만은 막아야 합니다.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그러한 법사위의 변호사시험법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도서와 벽지 거주자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빈민층에게 장학금을 확대해서 도입을 한 것도 모자라서 예비시험을 도입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에서도……

○ **의장 김형오**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박선영 의원** 30개가 넘는 주에서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서 무려 30% 가까운 학생들이 예비시험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총 입학정원을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 10%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그렇게도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 가운데에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최소한의 길, 우리가 댐을 만들어도 물고기가 다니는 어로를 열어 놓는 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부모에게 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진입장벽 자체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김형오** 박선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倫碩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변호사시험법안의 성안 과정에 참여한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용석 의원의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지난 2007년 국회가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취지를 도외시킨 견해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스쿨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건국 후 오랜 세월 고시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고시를 통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고급공무원도 되었습니다. 고시에 합격만 하면 장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뒤로 하고 신림동 고시촌에 모여 고시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시 낭인이 양산되어 국가인력의 낭비가 극에 달했고 정규 대학 교육보다는 고시 준비 사교육이 횡행하는 등 그 폐해가 극심했습니다.

이에 시험에 의한 인재 선발방식의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방식인 영미식 로스쿨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찬반양론이 뜨겁게 부딪혀 10여 년 동안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2007년 7월, 17대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로스쿨법이라고 불리우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이 통과되었고 2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3월 전국 25개 대학에 총 정원 2000명 규모의 25개의 로스쿨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전공의 우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에 들어와 3년간 전문적·체계적 교육을 받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10여 년 고심하여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놓고 그와 별도로 그 뒷문에서 로스쿨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것은 한마디로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몰각하는 주장이고 로스쿨제도를 채택한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이름만 바꾸어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하자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혹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처럼 가난한 학부 졸업생은 학비가 비싼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해 변호사가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행 사법시험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스쿨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특별전형을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합격 후에는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로 금년도에 125명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였고, 327명이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행 사법시험은 전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난해서 로스쿨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포퓰리즘 주장입니다.

강 의원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비시험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비시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시험을 오히려 로스쿨 교육을 생략하고 단기간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시험이 이용될 우려가 큼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비싼 사교육을 받고 예비시험에 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로스쿨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의 문호를 열겠다고 합니다. 2000명의 10%면 200명입니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만약 로스쿨 졸업생 외에 200명을 별도로 예비시험을 통해 합격시킨다고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사법시험이 돼서 현행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다. 다시 신림동 고시촌에 200명의 자리를 노리는 수만 명의 고시생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처럼 강 의원이 제시한 변호사예비시험은 위험천만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2013년에 예비시험 도입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이 병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비시험제도를 논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당장 변호사 시험법에 예비시험을 명시하자는 강 의원의 수정안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로스쿨제도에 족쇄를 채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에는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혹시라도 자세히 모르시고 수정안에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있으시다면 예비시험제도의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이해하시고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수정안에 반대하여 주시고 사법시험법안 원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오** 장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윤근 의원, 우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우윤근 의원 단하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수정안 반대.)

수정안 반대.

박영선 의원은?

(○ 우윤근 의원 단하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수정안 찬성.

토론은 우윤근 의원과 박영선 의원 두 분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앞의 두 분은 5분 시간을 초과했는데도 똑같이 봐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다 5분, 시간 범위를 꼭 지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근 의원** 원래 찬반이 교차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께서 저 보고 먼저 하라고 해서 좀 불리한 구도입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많은 논란과 토론을 거쳤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짧은 시간에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 특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자문위원회에서 세 차례, 자문위원들은 여야가 공히 시민단체, 학계, 법조인 모두 망라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세 차례, 공청회를 두 차례 한 달 동안에 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90%가 예비시험을 두는 것은 존경하는 강용석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성을 쌓기도 전에 쌓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 성을 쌓은 다음에 허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강용석 의원을 비롯한 78인의 동료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의 취지, 제일 중요한 쟁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법안에 충분히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전형, 취약계층을 위한. 올해 약 6.5% 2000명 중에 120명의 취약계층이 선발됐습니다. 또 장학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많은 돈이 듭니다마는 졸업하고 나서 10년에 걸쳐서 다 갚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충분히 특별전형제도를 통해서 마련되고 있다, 또 부족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이후에 로스쿨이 성을 쌓고 난 다음에 다시 성을 허물 것인지 섯길을 틀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또 지금 법과대학의 기득권 신뢰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 제도를 병존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실한 것은 제가 정부를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보태 줘야 된다 또 막 출범한 로스쿨제도에 우리가 신뢰를 줌으로써 그 견고한 성을 쌓고 난 다음에 허물 것인지 섯길을 틀 것인지 마련하는 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저도 아주 시골 촌놈이 어렵게 공부해서 운이 좋아서 사법시험에 20년 전에 붙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 충분히 잘 알고 있기에 한 달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정말 말로만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라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국가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의원** 법사위에서 비법조인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법사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한 달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법조인으로 해서 모두 찬성하는 분들만 구성이 돼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몇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권하셨던 분, 한 분하고 반대하셨던 한 분이 들어가서

구성은 찬성하셨던 분 다섯 분에 기권하셨던 한 분, 반대하셨던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문제가 바로 부대의견과 부칙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문제를 원래는 부칙 조항에 달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부칙으로 달기에는 법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의논한 끝에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대의견으로 법무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부대의견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2012년에 법무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다시 업무보고를 하셔서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겠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처음에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는 것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 주시겠다고 좀 확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 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또 안 계실 수 있고요, 법무부장관님은 특히 그때 안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2013년에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신뢰를 갖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요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스쿨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저희가 많이 모방을 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특파원을 하면서 보니까 미국은 로스쿨제도를 운영하면서 ‘베이비 바(Baby Bar)’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바라는 것은 미국에는 인가된 로스쿨이 190개가 있고 인가되지 않은 로스쿨이 또 있는데, 이 인가되지 않은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베이비 바라는 시험제도를 줘서 1학년 때 이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2학년부턴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똑같이, 인가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과 똑같이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예비시험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미국에 많은 불만을 가진 세력들, 그러니까 로스쿨에 돈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이 법으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숨통을 트면서 그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사회제도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비시험제도를 반드시 저렇게 꼭 막아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법은 법무부에서 채동욱 법무실장이 참 수차례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그동안 많은 의원들과 소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수정안이 또 제출되었기에 그 사이에 있었던 법사위 상황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러 나온 겁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판단과 그다음에 투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약속대로 시간을 다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의원 등 78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40인, 반대 154인, 기권 27인으로 강용석 의원 등 78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25인, 기권 37인으로서 변호사시험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5

법전원 VS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비교

(단위: 명, %)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인원	비율 (A)	인원	비율 (B)			인원	비율 (A)	인원	비율 (B)	
서울대	1,856	17.83	3,192	30.52	-12.69	경성대	1	0.01	1	0.01	0.00
고려대	1,559	14.98	1,717	16.42	-1.44	강남대	-	-	1	0.01	-0.01
연세대	1,456	13.99	1,210	11.57	2.42	순천향대	2	0.02	1	0.01	0.01
성균관대	678	6.51	705	6.74	-0.23	공군사관학교	4	0.04	1	0.01	0.03
한양대	592	5.69	642	6.14	-0.45	동덕여대	1	0.01	1	0.01	0.00
이화여대	686	6.59	540	5.16	1.43	교육대	-	-	1	0.01	-0.01
부산대	222	2.13	274	2.62	-0.49	경남대	3	0.03	1	0.01	0.02
중앙대	208	2.00	195	1.86	0.13	호남대	-	-	1	0.01	-0.01
경북대	197	1.89	191	1.83	0.07	호서대	1	0.01	1	0.01	0.00
경희대	301	2.89	188	1.80	1.09	강릉대	-	-	1	0.01	-0.01
전남대	159	1.53	172	1.64	-0.12	배재대	1	0.01	1	0.01	0.00
서강대	234	2.25	164	1.57	0.68	상지대	2	0.02	1	0.01	0.01
한국외대	252	2.42	143	1.37	1.05	우석대	1	0.01	1	0.01	0.00
건국대	119	1.14	118	1.13	0.01	서원대	-	-	1	0.01	-0.01
경찰대	89	0.85	114	1.09	-0.24	선문대	-	-	1	0.01	-0.01
동국대	69	0.66	93	0.89	-0.23	기타	-	-	14	0.13	-0.13
서울시립대	129	1.24	86	0.82	0.42	기타 4년제	-	-	34	0.33	-0.33
전북대	84	0.81	66	0.63	0.18	포항공대	40	0.38	-	-	0.38
아주대	61	0.59	43	0.41	0.17	학점은행	24	0.23	-	-	0.23
단국대	27	0.26	40	0.38	-0.12	한국항공대	13	0.12	-	-	0.12
국민대	38	0.37	39	0.37	-0.01	덕성여대	9	0.09	-	-	0.09
충남대	72	0.69	38	0.36	0.33	서울교대	8	0.08	-	-	0.08
숙명여대	121	1.16	37	0.35	0.81	한국교원대	7	0.07	-	-	0.07
동아대	75	0.72	37	0.35	0.37	상명대	7	0.07	-	-	0.07
인하대	54	0.52	36	0.34	0.17	평생교육진흥원	6	0.06	-	-	0.06
원광대	41	0.39	31	0.30	0.10	성공회대	6	0.06	-	-	0.06
영남대	61	0.59	31	0.30	0.29	경인교대	6	0.06	-	-	0.06
송실대	39	0.37	24	0.23	0.15	전주교대	5	0.05	-	-	0.05
홍익대	73	0.70	16	0.15	0.55	인제대	5	0.05	-	-	0.05
한국방송통신대	12	0.12	16	0.15	-0.04	대구카톨릭	5	0.05	-	-	0.05
강원대	28	0.27	14	0.13	0.14	대구교대	5	0.05	-	-	0.05
한동대	61	0.59	12	0.11	0.47	청주교대	4	0.04	-	-	0.04
충북대	47	0.45	12	0.11	0.34	서울여대	4	0.04	-	-	0.04
조선대	26	0.25	11	0.11	0.14	한예종	3	0.03	-	-	0.03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인원	비율 (A)	인원	비율 (B)			인원	비율 (A)	인원	비율 (B)	
성신여대	20	0.19	10	0.10	0.10	목포해양대	3	0.03	-	-	0.03
광운대	13	0.12	10	0.10	0.03	대전대	3	0.03	-	-	0.03
명지대	9	0.09	10	0.10	-0.01	공주교대	3	0.03	-	-	0.03
한국해양대	15	0.14	10	0.10	0.05	해군사관	2	0.02	-	-	0.02
서남대	-	-	8	0.08	-0.08	한성대	2	0.02	-	-	0.02
인천대	7	0.07	8	0.08	-0.01	울지대	2	0.02	-	-	0.02
경원대	2	0.02	7	0.07	-0.05	울산과학기술대	2	0.02	-	-	0.02
계명대	9	0.09	7	0.07	0.02	송실사이버대	2	0.02	-	-	0.02
경상대	4	0.04	7	0.07	-0.03	부산교대	2	0.02	-	-	0.02
부경대	13	0.12	6	0.06	0.07	한세대	1	0.01	-	-	0.01
경기대	2	0.02	5	0.05	-0.03	한국사이버대	1	0.01	-	-	0.01
육군사관학교	10	0.10	5	0.05	0.05	한국기술교육대	1	0.01	-	-	0.01
독학사	11	0.11	4	0.04	0.07	천안대	1	0.01	-	-	0.01
가톨릭대	19	0.18	4	0.04	0.14	차의과대	1	0.01	-	-	0.01
대구대	4	0.04	4	0.04	0.00	제주교대	1	0.01	-	-	0.01
영산대	6	0.06	3	0.03	0.03	장로회신학대	1	0.01	-	-	0.01
동의대	1	0.01	3	0.03	-0.02	울지의대	1	0.01	-	-	0.01
제주대	20	0.19	3	0.03	0.16	안양대	1	0.01	-	-	0.01
수원대	1	0.01	3	0.03	-0.02	신라대	1	0.01	-	-	0.01
안동대	-	-	3	0.03	-0.03	서울과기대	1	0.01	-	-	0.01
울산대	-	-	3	0.03	-0.03	백석대	1	0.01	-	-	0.01
목포대	1	0.01	3	0.03	-0.02	동서대	1	0.01	-	-	0.01
세종대	10	0.10	2	0.02	0.08	대진대	1	0.01	-	-	0.01
카이스트	96	0.92	2	0.02	0.90	대구한의대	1	0.01	-	-	0.01
창원대	2	0.02	2	0.02	0.00	대구외대	1	0.01	-	-	0.01
순천대	2	0.02	2	0.02	0.00	금강대	1	0.01	-	-	0.01
관동대	-	-	2	0.02	-0.02	글로벌사이버대	1	0.01	-	-	0.01
청주대	1	0.01	2	0.02	-0.01	광주대	1	0.01	-	-	0.01
서경대	2	0.02	2	0.02	0.00	가천의과학대	1	0.01	-	-	0.01
한남대	2	0.02	2	0.02	0.00	가천대	1	0.01	-	-	0.01
부산외대	1	0.01	2	0.02	-0.01	외국대학	183	1.76	-	-	1.76
한림대	2	0.02	2	0.02	0.00	합계	10,410		10,458		-
전주대	1	0.01	2	0.02	-0.01						

* 2011년~2015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10,410명과 2002년(제44회)부터 2014년(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458명을 대상으로 분석

별첨 16

연도별 법전원 취업률 현황 (2012~2014년도)

학교명	2012년도			2013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자	취업률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자	취업률
강원대	26	26	100.0%	29	27	93.1%
건국대	31	31	100.0%	31	25	80.6%
경북대	75	71	94.7%	85	69	81.2%
경희대	50	46	92.0%	51	48	94.1%
고려대	98	98	100.0%	100	84	84.0%
동아대	53	48	90.6%	45	42	93.3%
부산대	85	83	97.6%	84	77	91.7%
서강대	29	29	100.0%	35	31	88.6%
서울대	114	106	93.0%	132	115	87.1%
서울시립대	36	35	97.2%	46	33	71.7%
성균관대	97	103	106.2%	100	85	85.0%
아주대	41	37	90.2%	39	32	82.1%
연세대	91	88	96.7%	101	90	89.1%
영남대	47	45	95.7%	49	45	91.8%
원광대	37	37	100.0%	40	35	87.5%
이화여대	79	73	92.4%	80	62	77.5%
인하대	35	35	100.0%	44	39	88.6%
전남대	86	77	89.5%	83	65	78.3%
전북대	56	56	100.0%	62	55	88.7%
제주대	30	29	96.7%	27	20	74.1%
중앙대	35	39	111.4%	43	42	97.7%
충남대	64	63	98.4%	79	65	82.3%
충북대	37	42	113.5%	57	53	93.0%
한국외대	41	34	82.9%	31	29	93.5%
한양대	78	76	97.4%	65	58	89.2%
합계	1,451	1,407	97.0%	1,538	1,326	86.2%



송 석 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로 세간에서는 독일이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가 1984년 이를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는 주장이 거듭하여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되풀이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는데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가 1984년 이를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 독일의 사례”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독일 법과대학의 경우 1970/8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학생들은 대학입학 이전에 13년의 교육을 받고서 입학하는데 대학에는 교양과정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교과과정은 우리나라에서 학부 전공과정과 석사과정을 합친 것에 상응하였다. 전통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며 법률가, 의사, 교사나 개신교성직자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는 국가시험의 합격이 이를 대신하게 되어 있었다.

독일에서의 법률가양성제도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그 이후의 실무연수라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1차 국가시험은 법과대학의 졸업학위인 동시에 실무연수에의 입학시험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무연수를 마치고 제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법조직역(독일에서는 변호사, 판사, 검사 및 행정공무원이 이에 해당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는 이른바 완전법률가(Volljuristen)가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19세기말에 이르러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듯이 독일에서도 20세기초부터 법률가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혁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법철학자인 라트브루흐는 적극적인 사법개혁론자여서 법무부장으로 재직하던 1920년대초에 법학교육제도와 사법제도의 광범위한 변화를 추구하였다. 법률가양성제도와 관련하여 그는 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년동안 변호사로서의 실무수습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 변호사로서 종사할 것인지 국가가 주도하는 법관연수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고 제2차 국가시험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개혁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되어 1971년 독일법관법에 각 주에서 1단계 법률가양성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는 제1차 국가시험 전후로 대학교육과 실무연수로 나뉘어 있던 법률가양성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법학이외에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접학문을 도입하려 하였다. 각 주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법학교육과 실무연수를 통합하는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어 시도되었지만 1984년 이후 전통적인 2단계 모델로 복귀하였다.

지난 7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여름계절강좌를 위해 방문했던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마리온 알버스(Marion Albers) 교수는 필자와의 대답에서 1단계 법률가양성제도를 통해 법학교육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2단계 법률가양성제도에 비해 교과과정의 밀도가 높아서 힘들기는 했지만 학업 중간의 적절한 시점에서 실무연수를 함으로써 “재미없는” 실용학문인 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제도가 교육재정의 압박으로 확대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였다.

요약하자면 독일에서는 이미 백여년전부터 대학교육과 법률가 자격시험이 연계되어 있었는데 단지 1971년에 몇몇 대학에서 실무연수과정을 대학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실험을 했고 이후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미국식 로스쿨이 존재한 적도, 이를 도입한 적도,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독일의 법률가 양성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 국가시험에는 약 70%, 제2차 국가시험에는 약 80%가 합격하여 해마다 8천명 전후의 신규법률가를 배출하고 있다. 법률가의 수는 약 340,000명에 이르는데 그 중 약 220,000명은 전통적인 법조직역에, 나머지는 기업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일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로스쿨 도입 실패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독일의 모델을 수용하여 인구대비 연간 5천명의 신규법률가를 배출하자고 주장하지 않는 모순의 배경은 무엇일까.

어느덧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칠년이 지나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그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제도를 보완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은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 대 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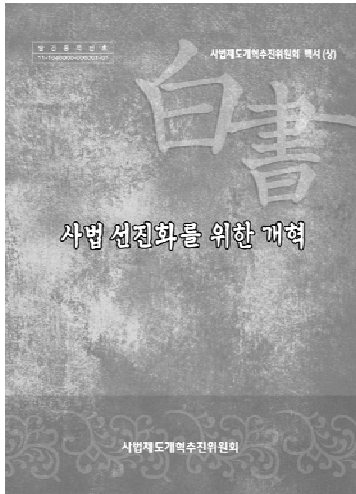
논문으로, 그리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1998~2000)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위해 애썼던 사람으로서, 2007년의 로스쿨법 제정 후 드디어 2009년에 로스쿨이 현실로 출범해 그 3년 뒤부터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법조직 각 분야에 진출·활약하기 시작한 이래 로스쿨의 무난한 성공적 정착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며 그 장래를 낙관해 왔다.

헌데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2017년이면 사라지게 돼있는 사법시험제도를 존속시키려는 무분별·무책임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나라 전체를 위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낸다.

로스쿨제도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우리와 일본로스쿨의 경우를 혼동해서 생긴 것이다. 일본에서는 로스쿨인가를 받은 대학의 학부 법과대학과 사시를 준치시키고 또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도 예정했던 년 3000명 이하로 대폭 축소시켜 왔던 까닭에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해마다 급속하게 떨어졌고 따라서 로스쿨의 인기도 떨어지게 되었다. 사시존치주장은 잘 정착돼 온 우리나라 로스쿨도 일본의 실패의 예를 따르게 만들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매년 배출되는 법조인의 정원을 조정하는 법조계가 사시에서 배출될 법조인수를 감안해 로스쿨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정할 것임에 틀림없고 이와 함께 구지 로스쿨을 가지 않고 사시로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통한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사시에 의한 법조인선발은 역시 전문직인 의사를 (의사)시험을 통해 뽑자는 것에 비견된다. 의사가 부족했던 과거 의대를 나오지 않고도 시험으로 의사가 될 수 있던 시절도 우리나라에 있었다. 고교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오늘의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 없이도 사시로 고매한 전문직(learned profession)을 양성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발상은 세계적 추세나 우리나라 발전의 추세에 비추어서도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서구선진국 가운데 대학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발간 자료집

교육 없이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로스쿨 제도는 제대로 이수한 대학학부졸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종래의 송무중심의 법률가뿐만 아니라 학부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예. 특허법, 환경법, 경제법 등)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법률가 양성에 사시출신의 경우보다 단연 유리하다. 우리는 곧 전면적인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있지 않은가? 또 문사철(文史哲)을 비롯한 인문교육·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공학 등을 두루 갖춘 대학에서의 제대로 된 학부·로스쿨 교육은 거기서 배출되는 법률가로 하여금 문제의 인성·직업윤리의식을 지니게 만드는데도 사시의 경우보다 단연 유리하다.

종래에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 일학년 때부터 고시과목 위주의 암기식 공부를 하고 강의 수강도 고시과목 위주로만 했다. 법대생의 경우의 비사시법률과목은, 타과생의 경우 자기 전공과목은, 겨우 학점이나 따는 정도였다. 정치학과를 비롯한 사회대 인문대 등 여러 학과의 경우 과가 텅 빌 정도로 자기 전공과목은 팽개치고 고시학원 수강 등 고시공부에만 매달려 가히 캠퍼스 전체가 고시준비로 황폐화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로스쿨 체제는 대학 전체를 살리는 조치이기도 했다.

로스쿨이 주로 고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요 “개천에서 용 나는” 계층상승을 봉쇄하는 제도라는 주장은 허위다.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의 사회배경을 비교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보면 두 제도의 계층배경에 전혀 차이가 없다. 지금 로스쿨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광범위한 입학 및 재정지원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다. 장차 고소득계층에 들어가게 될 로스쿨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이외 일체의 장학금이 없는 미국 로스쿨(및 메디칼스쿨)과 우리 로스쿨은 사뭇 다르다. 해결점은 로스쿨 약화가 아니고 오히려 로스쿨 정원과 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원에 있다.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수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Copyright ©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